

20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1장 사회서비스 개관 / 1

2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총괄편) / 13

3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편) /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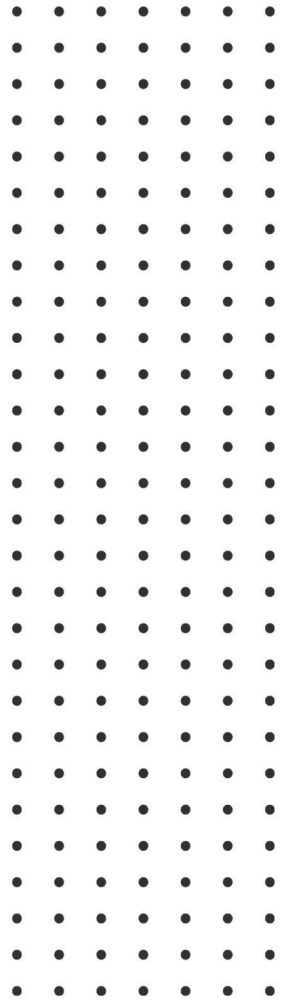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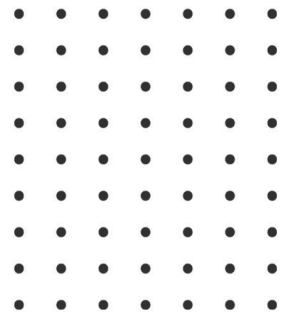
I 지역선택형

II 지역개발형

부록 공통서식 / 123

1장

사회서비스 개관



I | 사회서비스의 개념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
 -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사회서비스의 특징

-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 명시적(전자카드) 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시·청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7대 바우처 사업 추진
 - * 기타 바우처 적용 사업으로는 보육전자바우처('09.9월) 사업이 있음
- 나머지 사업은 주로 공급자 지원형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음

2 추진 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이 21.7%('03년)이나 우리나라는 13.1%로 현저히 낮아 매우 열악한 수준(한국고용정보원)
 - 가족, 특히 여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공식 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시장화 내지 사회화가 불가피

-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
 -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 서비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
 - 따라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 전략 예방

-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사회경제의 양극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대표 되는 신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
 - 인적 자산과 사회기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빈곤의 세습 방지 및 사회이동 촉진

-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27.6명)는 서비스업 평균(20.5명)은 물론 제조업 평균(12.1명)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
 - 특히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단위 : 10억원당 명)

구분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취업계수	27.6명	20.5명	16.9명	12.1명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자영자+무급가족 포함), 한국은행('08년)

-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아직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한국 14.7%, 미국 26.3%, 일본 17.4%)
- 1인당 GDP가 유사한 시점을 비교해도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1인당 GDP 21천 달러 시기의 보건·사회복지분야 고용비율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해당연도	2007	1987	1988	1991	1996	1987
GDP(\$)	21,653	19,910	20,821	22,693	20,990	20,414
고용비율(%)	3.2	4.1	7.7	7.3	10.6	16.0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54.8	54.9	66.8	60.6	67.6	81.1
사회지출 중 현물지출 비중(%)	3.8	5.0	5.3	7.6	8.9	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5월)

⇒ 사회서비스업 중 보건·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음을 시사

③ 추진 경과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06. 4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급실태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전략 보고
-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06. 7월) 등 전담 추진조직 구성·운영
- 사회서비스 확충 실행전략 마련(대통령 연두업무보고, '07. 1월)
 -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촉진, 품질제고 등 3대 기본 방침 확정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07. 2~ 4월)
 - 지불·결제주관 금융기관(국민은행) 선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바우처 지불정산 전담기관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설립('07. 3월)
-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 시행 및 확대('07.5월 ~)
 -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보조('07. 5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7. 7월), 산모신생아도우미('08. 1월), 가사간병도우미('09.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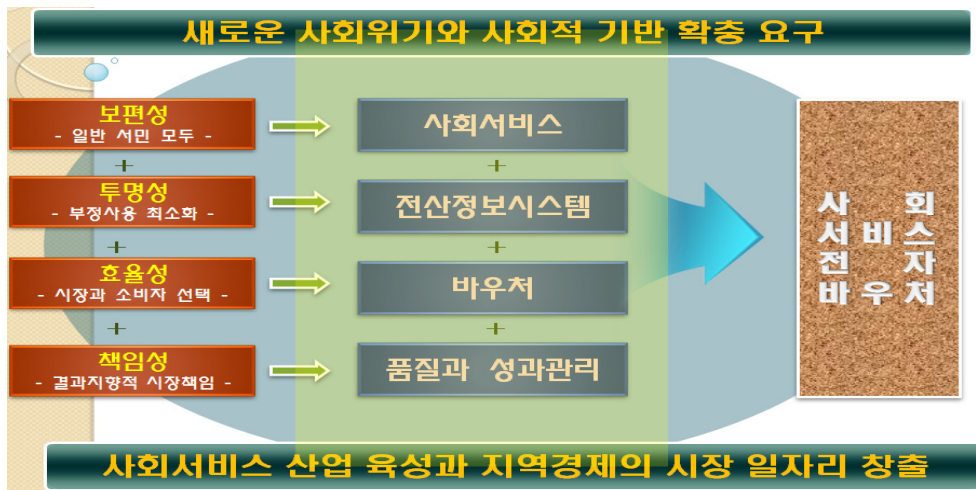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새정부의 능동적 복지 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
- 『일자리 창출 대책』 회의(경제수석 주재, '08. 7. 24)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내실화 방안 수립 마련 논의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선진화 전략 발표('08. 9. 18)
 - 시장형성 및 산업화 기반 마련
 - 공공투자 확충 및 투자 효율화
 -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선진화 방안 마련('09. 4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품질기준 설정
 -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선택권 강화
 - 소비자에 의한 입체적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력 풀(pool) 운영
-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마련('10.5.27, 국가고용전략회의)
 - 간병, 보육, 돌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II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1 전자바우처 제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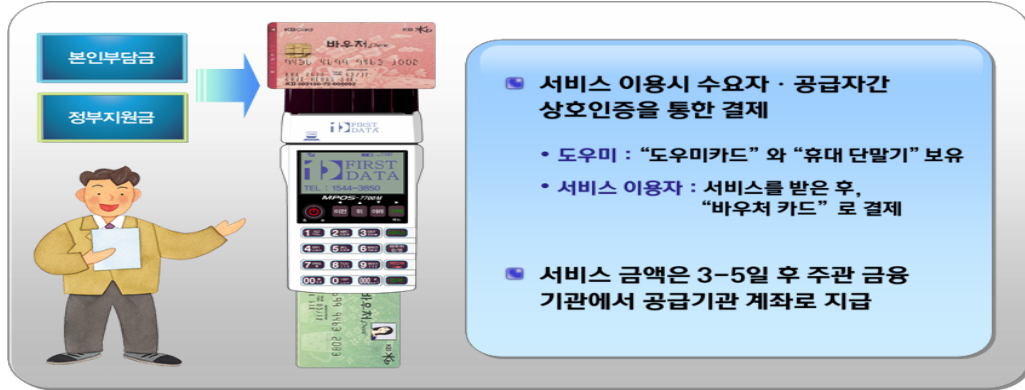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제도
 - ☞ 바우처(이용권) :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형태
 - ☞ “e-바우처”란 서비스를 구매·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신용·체크카드 등 금융카드로 구현한 형태
- 지불결제 자동화 등 업무 효율성 및 정보 집적 관리 등을 통한 과학적 관리 기반 마련

2 도입 배경



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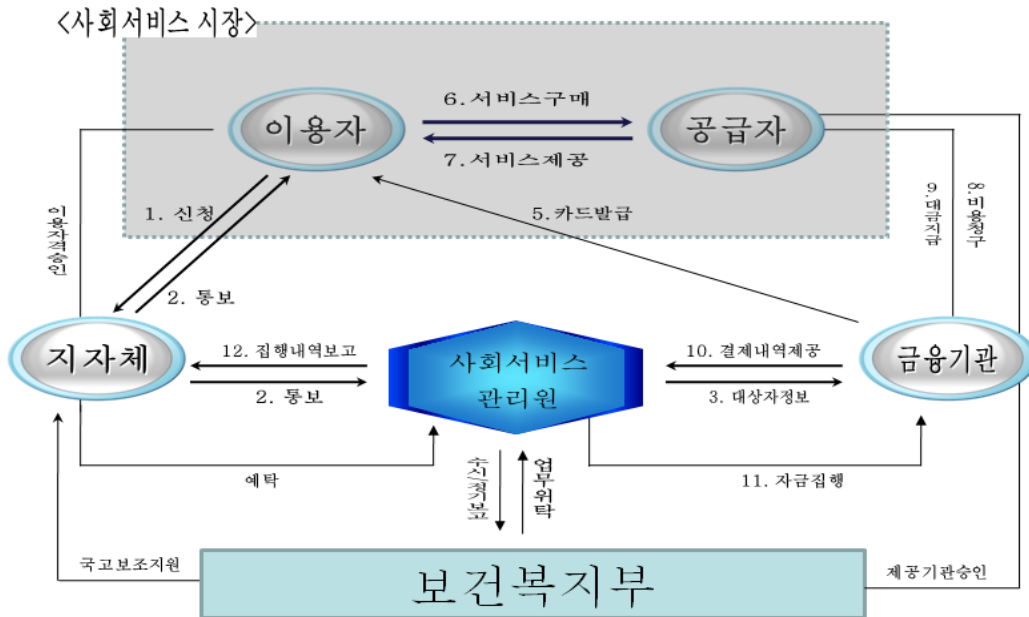
□ 지불·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대상자 중심 통합시스템

- 중앙단위의 정보 집적 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자격정보, 이용실적 정보, 지불결제 정보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담기관(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설립·운영('07. 3월 ~)

4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흐름도



III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

1 사업 목표

-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저소득 무직가구 여성 등 취약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도모
-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편적 복지 구현

2 정책적 의의 :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수단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는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하여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접근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분권적 방식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개발 필요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욕구	기초적 욕구, 절대적 빈곤 (빈곤·질병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상대적 욕구, 상대적 빈곤 (인적자산 및 사회기반 투자)
대응방식	국가 최저기준 설정, 특정된 서비스, 소수의 전문복지기관 중심	보편적이며, 지역·계층별 서비스, 다양한 제공기관 참여
개발·운영	중앙정부 중심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중심

- 지역의 적극적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품질향상과 경쟁을 통해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3 그동안의 주요 성과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중·고령 여성, 청년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 '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87개 사업 17,231명(10. 10. 31일 현재)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 * 이등인지능력 향상서비스(전국, 만2~6세), 노인,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만65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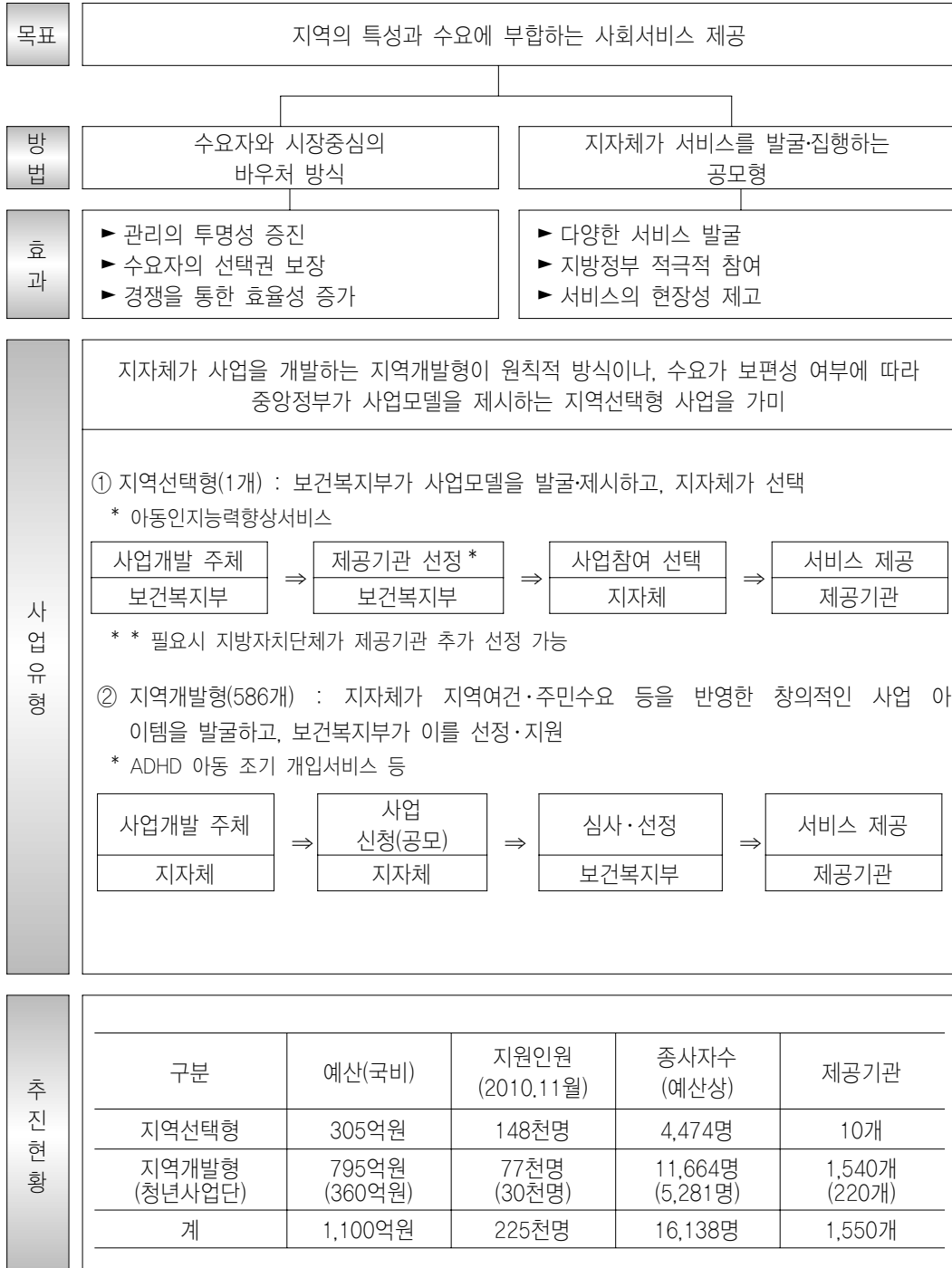
-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 형성
 - * 장애아동재활지원바우처 2009년부터 별도사업으로 추진('08년 77억 → '09년 293억)
 - * 이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자수 확대('07. 8월 3천 → '10. 10월 233천명)

□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바우처 방식)의 장점 적극 활용

- 복지 수요자 지위 강화 (소극적 복지수급자 → 능동적 서비스 구매자)
 - 바우처 방식을 통해 복지수혜자의 서비스 선택권, 소비자 주권 강화
- 지불, 정산업무 전산화로 지지체 행정부담 경감
 - 중앙정보 집적체계로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감소
 - * 지불 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 ~ 2개월) → 전자바우처(5일 이내)
- 신규 공급기관 설치 없이 민간자원 활용한 서비스 제공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지원방법	민간단체 보조금	바우처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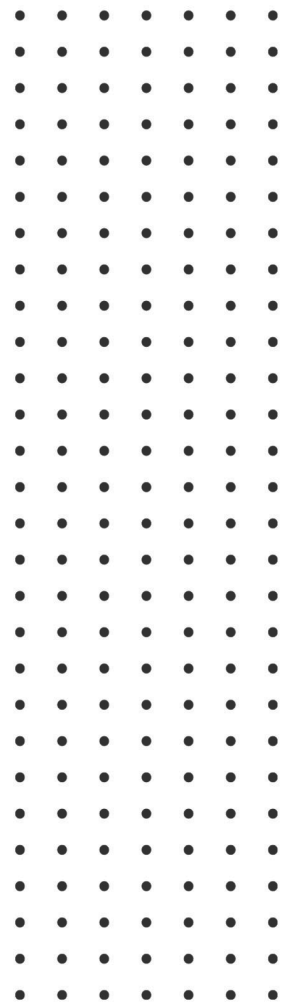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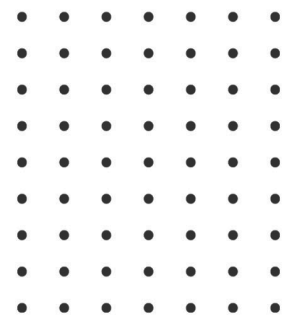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0대 유망사회서비스 개요

(단위 : 개, 명, 백만원)

연번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기간)	평균 비우치 지원액 (월)	예산 ('10년)	지자체 ('10년)
1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발달검사 및 발달지연 의심아 동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부모· 교사에게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방향성 제시	주2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12개월 지원) * 발달검사(1회)	20만원	220	전북 등 1개
2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약기교육 및 정서치유서비스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의 정서적 문제해결	월4회 시설방문 정서순화프로그램 클래식 교육 등 (12개월 지원)	18만원	3,300	서울 서대문구 등 22개
3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문제행동(ADHD)아동에 대한 조기 발굴·치유를 통한 건강한 성장 도 모	주1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12개월 지원)	13만원	9,425	서울 중랑구 등 103개
4	인터넷게임 중독아동 치료서비스	인터넷·게임 중독위험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 해 학업 비효율성 및 아동·청 소년 범죄 등 사회적 문제 예 방	주1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12개월 지원)	18만원	신규 사업	신규 사업
5	맞춤형운동 처방서비스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서 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주1~5회 재가방문또는 집합서비스(12개 월 지원)	19만원	6,310	충남 공주시 등 57개
6	돌봄여행 서비스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노 인·장애인 여행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욕구 충족	집합 서비스 (1회 지원)	18만원	신규 사업	신규 사업
7	장애인보조 기구렌탈 서비스	고가의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비용절 감 및 재활지원	재가방문서비스 (12개월 지원)	8만원	300	서울 등 5개
8	시각장애인 인마서비스	노인·장애인 대상 안마서비스 및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주1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12개월 지원)	9만원	2,900	서울 도봉구 등 31개
9	나홀로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맞벌이가정의 나홀로 아동(초등 학생)에 대한 양육 서비스를 통 해 자녀양육의 부담경감 및 아 동보호	주5회(1회 6시간) 재가방문 (12개월 지원)	44만원	신규 사업	신규 사업
10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장애인 및 가족 대상 일 상생활 관리 및 건강한 사회 생활 지원	주1회 재가방문 또는 시설방문 (12개월 지원)	18만원	697	대전 등 4개

2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총괄편)



목 차

〈주요 변경 내용〉	17
I. 사업 개요	18
II. 서비스 신청	22
III. 대상자 선정	23
IV. 서비스 실시	27
V. 이의신청	33
VI. 개인정보보호	34
VII. 바우처 지급 및 이용	35
VIII. 제공기관 및 인력	48
IX. 예산집행 및 정산	61
X. 대상자 관리	67
XI. 행정사항	71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사업기간	○ 원칙적으로 1년	○ 2011.2.1~2012.1.31(1년)
사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 - (시도) 별도 전담팀 구성 - (시군구) 사업 전담자 배치 또는(가칭) 자활고용지원팀(계)에서 수행 - 위 사항이 곤란한 경우, 시도는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시군구는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총괄 하되 필요시 업무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도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 - (시도) 별도 전담팀(계) 구성 - (시군구) 사업 전담인력 배치 - 위 사항이 곤란한 경우, 시도는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시군구는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총괄 하되 필요시 업무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도 가능 - 서비스 개발 경영자문 시행 및 사업 관리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단”(가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설정 및 납부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취약계층 등 10%미만 설정가능하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부과 ○ 납부시기: 서비스 개시전에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이 이용자로부터 매월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이 이용자로부터 분기별로 실시 ○ 제공기관은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여부를 지도·감독 ※ 시군구청장이 모니터링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록결과를 활용
사업별 예산조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사업운영 중 지자체별 배정 예산액내에서 복지부 사전승인없이 사업별 예산확정액의 10%내 자율 조정가능 - 선택형과 개발형 간의 사업 예산액 조정은 불가

I | 사업 개요

1.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하향식	④ 지방분권식·상향식
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	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2. 사업 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3. 사업 기간

- 2011.2.1~2012.1.31(1년)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나,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정책변경, 예산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축소 또는 조기 중단 가능

4. 서비스 대상자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단,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사업별 상이
(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만2~6세 아동(2005.1.1~2009.12.31출생)

5. 대상자 선정 절차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요구 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통지
 -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6. 총 사업비

- 2011년도 총사업비 : 국비 1,353억원
- 지원조건 : 매칭 (서울 50%,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지원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7. 사업추진체계

□ 전담팀(계) 구성 운영

-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전담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전담팀(계)을 구성하고, 시·군·구청장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담당부서내 사업전담인력 배치 요망
- 시·도 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지침 작성, 제공기관 지정, 홍보 등을 수행하고 대상자 선정·관리 등은 시·군·구청장이 담당
- 시·군·구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주관 지자체가 사업 지침, 제공기관 지정 등을 총괄
 - 다만, 주관 지자체가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간 협의 하에 주관 지자체를 별도지정하거나 지자체 조합 형태나 별도 사업단 형태의 운용도 가능
- 지역 여건상 전담팀(계) 구성 또는 사업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 시·도는 복지정책과(또는 사회복지과, 복지청소년과, 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봉사과), 시·군·구는 사회복지과(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 시행 및 예산확보 등 업무를 총괄 수행하되, 필요시 대상자별 담당부서에서 사업 시행도 가능

□ 사업간 연계 조정

- 사업간 연계 조정 등을 위해 각 사업 참여 부서별 분기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원칙 (관련 회의자료 별도 보관)

□ 경영 지문기구 설치 운영

- 시·도지사는 서비스 개발 및 경영 지문 수행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해 민간연구기관 등을 활용, “사회서비스 지원단”(가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공모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후 통지)

I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총괄편)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사업 총괄
	사회서비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시·도	사업총괄담당부서(과,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바우처 사업 총괄 ○ 본청 및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 성과평가(보건복지부에 반기별 보고)
	사업별 담당부서(과,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 사업 지침 마련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관리 ○ 사업홍보 ○ 서비스 대상자 선정(시도개발사업)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사업총괄담당부서(과,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바우처 사업 총괄 ○ 본청 사업 관리 감독 ○ 성과평가(시도에 반기별 보고)
	사업별 담당부서(과,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관리 ○ 사업 홍보 ○ 서비스 대상자 선정(시군구개발 및 공동개발사업) ○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공급인력 모집, 교육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Ⅱ | 서비스 신청

1.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예외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기관(법인·단체)인 경우는 기관(법인·단체)대표자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대상자의 보호 동의 필요)
 -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시·군·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결과를 매월 21일 18시까지 사회복지서비스관리원으로 전송

3. 신청장소 및 방법

- 신청장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원칙)
- 신청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등

4.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1호)
-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기타 해당 시군구청장이 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사회복지통합망으로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 불필요)

III | 대상자 선정

1.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원칙(비만아동건강관리,장애아동휠체어렌탈서비스 제외)
 -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적용 가능
 - ※ 다만, 사업 조정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지자체 특수성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	1,380	2,492	3,646	4,155	4,593

주1) 통계청 「가계조사」, '09년 4/4분기~'10년 3/4분기 평균값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438천원씩 증가(438천원=5인-4인(4,593-4,155))

☞ (붙임3)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직장/지역/혼합보험료 수준)를 참고하여 대상자 선정

- 단, 지역개발형 사업 중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장애아동 맞춤형휠체어렌탈서비스 ('10.10.1~)는 소득기준 제한없음
- 연령기준: 사업별 상이
 - (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만2~6세아동(2005.1.1~2009.12.31출생)
- 지역개발형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확정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선정

2. 선정 절차

○ 표준적인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신청가구의 여건, 대상자 선정 요 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소득 조사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
↓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선정결과 전 송
↓		
통 지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상담 및 욕구조사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장애 여부 및 정도, 건강상태, 주거 여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

- 대상자 편의 등을 위해 욕구조사는 가급적 간소화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서비스 성격상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욕구 조사 의뢰 가능

* 이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욕구판정 조사결과를 즉시 해당 읍·면·동에 통보, 조사 결과를 확인·입력토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복지요구의조사),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3(복지요구의조사 및보호의결정통보)

4. 소득 조사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아동의 경우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임(주민등록표 기준)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또는 부모(특히 아동의 경우)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4인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소득 조사

- 소득 요건 적용시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확인 등 가능한 한 간소한 방식으로 확인
-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입액 산정
-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4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times 0.75
-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액과 선정 기준액을 비교, 대상자 적합여부 판정
- 노인대상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기타 상기관련 조사 및 정보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

5. 대상자 선정

- 선정권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한 소득, 욕구 판정 결과 등을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6. 선정통지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서식4, 서식9 참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출력물(대상자 결정통지서)을 신청자에게 통지
 - * 비우체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
-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4(보호의결정)

IV | 서비스 실시

1. 기본방향

- 동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대상자별 제공(이용)계획에 따라 실시
- 동 서비스는 현물(“바우처 이용권”)제공 원칙
- 동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하는 서비스로 함
- 동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대상자 중심으로 함

2. 서비스 실시절차



3.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 연락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사전 홍보 실시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원활하게 함
 - 필요시 해당 시·군·구는 제공기관에게 대상자 수, 분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홍보의 편의 제공

4. 상담

① 초기상담(intake)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를 면담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

② 상담 내용

-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등을 파악
- 대상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등을 파악
 - 대상자의 욕구, 가구 특성 등
 - 필요 시 별도 조사표를 사전에 준비, 조사표에 의한 조사 실시

5.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①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시·군·구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유형, 방법 및 제공(이용)기간, 서비스 가격(본인부담금 포함)등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현황, 성과목표 및 지표, 소요예산, 향후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를 기초로 현재 여건 및 대상자 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 종류,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을 결정

②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담을 통해 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서비스 유형, 방법, 제공횟수 및 제공기간 등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를 작성
 - 상담을 통해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내용, 일정,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작성
 -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에 서비스 공급인력 확보 및 교육, 바우처 가맹점 가입, 단말기 구매,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서비스 대상자 확보 및 계약, 서비스 대상자 정보 등록, 협력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컨소시엄의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개시 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서식 27호)

③ 작성시 고려사항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제공계획서 작성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6.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1] 정의

-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인력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2] 계약 당사자

- 대상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과 서비스 제공기관

3] 주요 계약 내용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및 지급방법
-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성추행 등 쌍방간 부당·부정 시 계약 취소(바우처 지원 중단)

4] 계약 절차

- 대상자를 “갑”으로 제공기관을 “을”로 계약서 작성
 - * 서비스 제공계약서(예시) : 서식 12
-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
 -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 서식 27
- 제공기관은 계약 사항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 등록

7. 서비스 실시

① 기본방향

- 서비스 제공인력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실시절차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후 단말기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 결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
-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서식 13)에 기록
 -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후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 기록지 작성 시 대상자명, 주민번호(생년월일), 제공자명, 서비스 내용, 대상자 확인 등 필수
 - *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이의 활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이용)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③ 서비스 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대상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대상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 대상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 제공인력이 특정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8.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은 분기별로 대상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보관 [☞ 서식 24]
 - 제공기관은 그 결과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 * 단, 6개월미만 단기사업은 최소 1회이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상 일치여부, 서비스 제공 충실도, 바우처 결제의 적절성, 서비스 이용효과, 모니터링 결과, 기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제공기관을 지도·감독

9. 서비스 종료

① 종료시기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종료
-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이 만료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

② 종료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은 14일 전에 대상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
- 대상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에 대해 통지

③ 종료절차

- 대상자 및 대상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통지(☞ 서식4)

V | 이의신청

1. 신청인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2. 신청기한

- 대상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3. 신청방법

- 이의 신청서(☞ 서식 5)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4. 처리절차

-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송부하지 아니함
 -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시·군·구청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군·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및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처리
 - *단, 바우처 생성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제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의 서비스이용이 없도록 유의

VI | 개인정보보호

- 관할 시·군·구청장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상담·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의2)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3조 2항)이외에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서,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VII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① 바우처 카드 개념

- 바우처 카드란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사업 전담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카드로서 서비스 비용 결제 수단

* 대상자 카드에 바우처를 전자적으로 수록, 관리함으로써 부정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출·정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② 바우처 카드의 종류

- 신용카드 : 카드발급 신청 시 신용카드를 신청한 대상자 중 KB 심사결과 적격자에게 발급

* 18세 이하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더라도 바우처 전용카드가 발급

- 체크카드 : 카드발급 신청 시 체크카드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되며, 전담금융기관 계좌와 연결

* 18세 이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신청하더라도 바우처 전용카드가 발급

- 바우처 전용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바우처 거래만 가능
-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아동 등 본인이 스스로 카드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발급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아동 대상 사업은 바우처 전용카드만 발급

③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

*카드발급 신청서류는 읍·면·동 등에서 보관

- 서비스 대상 결정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을 거쳐 전담금융기관으로 관련 자료 전송 (시·군·구→관리원→금융기관)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카드 발급시 아래 사항의 유의하여 발급하여야 함

바우처 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 ① 카드신청자는 보호대상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② 대상자가 이동인 경우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대상 이동의 명의로 발급
- ③ 대상자가 어린이집, 학교 등 기관인 경우 기관 대표자 명의로 카드 발급
- ④ 지택정보와 직장정보는 반드시 신청인(본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락처를 기재
- ⑤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이동재활치료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받는 서비스 개수와 상관없이 카드는 한 장만 발급
 - *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가시간병 사업과 별도 카드 운영
- ⑥ 서비스 신청시 기존 카드발급대상자의 경우 기 발급된 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짐에 따라 서비스종료 후에도 카드보관 및 관리에 유의
- ⑦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의 경우, 신규 서비스 신청 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카드 정보 신규 입력 불필요
 - * 서비스 대상자가 기 발급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재신청

④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 카드 배송

- 주요 도시는 인편배송, 나머지 지역은 우편(등기) 배송
- 본인 비거주 등으로 인편 전달되지 않을 경우도 우편(등기) 배송

□ 카드 사용 등록

- 바우처 전용카드는 사용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ARS(☎ 1566-5600) 등록 후 사용 가능

□ 카드 반송

- 카드발급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진 카드는 KB 각 지점을 거쳐 본사로 이송되어진 후 재분류 작업을 거쳐 재 배송

* 반송카드 재배송 문의 : KB 바우처전용 콜센터 (☎ 1599-7900)

【 바우처 카드 인편배송 가능지역 】

구 분	인 편 배 송 가 능 지 역
서울	전 지역
경기권	성남, 인천(옹진군 제외), 고양, 과천, 부천, 의정부, 광명, 안양,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구리,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이천, 김포, 남양주, 파주, 화성, 안성, 광주,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용인, 여주, 양평
강원권	원주, 춘천, 속초, 동해, 강릉, 원주, 태백, 삼척
충청권	대전, 청주, 충주, 제천, 천안, 아산
호남권	광주, 순천, 여수, 목포, 익산, 전주, 군산, 광양, 김제, 정읍, 남원, 나주
영남권	대구, 부산, 울산(울주군제외), 창원, 마산, 거제, 김해, 사천, 진주, 통영, 경산, 구미, 양산, 진해, 밀양, 포항, 경주, 안동, 문경, 상주, 영주
제주권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일부 도서지역 제외)

5] 카드 재발급 신청

□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KB 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자가 신고 후 재발급 받음

- 방문신청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KB 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카드전환(예 : 바우처 전용카드 → 신용카드)이 불가하며, 기존과 동일한 카드만 재발급 가능

- 전화신청 : KB 콜센터(☎ 1599-7900) 상담원에게 신청

* 상담원 연결(ARS) : 1번(개인회원) ⇒ 카드 또는 주민번호 입력 ⇒ 9번

- 방문 및 전화(ARS)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은행 본점으로 전화하여 신청

* 국민은행 본점 접수처 : 02) 2073-4973~4974

2. 바우처 생성

①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의 의미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통보 받은 후, 서비스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지원금(정부지원금)을 충전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업 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

□ 바우처는 포인트 형태로 지원

-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확정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우처지원금(정부지원금)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지원

· 시·군·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후

-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포인트의 현금화는 불가

* 바우처는 전월 21일 18시까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전월 말일에 생성 원칙

② 바우처 생성 원칙 : CAP 방식 적용

□ CAP 방식의 개념

- 매월 바우처 생성 시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를 생성하는 방식

□ CAP 방식의 적용대상 사업

- 대상자별 지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

□ CAP 방식의 적용 원칙

- 2개월 연속 미사용으로 2개월분 생성액이 누적되어 있거나, 누적 생성액이 2개월분 정부지원금 이상일 경우 익월 바우처 미생성

* 이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자 중 20,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정부지원금 반액 결제 등 전액이하 결제가 지속되어 누적 생성금액이 40,000원 이상이 될 경우 생성 중단

- 대상자별 지원기간 내에서만 지원

* 지원기간이 10개월인 이용자가 지원기간 중 미사용 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축소 지원

【 CAP 적용 사례 : 2개월 연속 미사용 】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생성 바우처	20,000	20,000	20,000	0	20,000	20,000
이용가능 바우처	20,000	2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실제 이용	20,000	0	0	20,000	20,000	20,000
잔여바우처	0	20,000	40,000	20,000	20,000	20,000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생성

□ CAP 방식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 시·도, 시·군·구 담당자 : CAP방식 도입에 따른 바우처 생성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제공기관 등에 사전홍보 철저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이용전후에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여 매월 이용 가능한 본인의 바우처량을 관리해야 함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본인의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 가능
- 제공기관(제공인력) : 서비스 실시 전에 반드시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및 잔량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생성 여부 및 잔량 확인 없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 요청은 부당청구로 간주

③ 바우처 예외생성

□ 생성주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바우처 정보 연계처리과정에서 전산오류 발생시 운영

- 시·군·구: 서비스 신청정보 오류 확인
 - 시·군·구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인해 서비스 신청정보 또는 등급변경 정보를 기한 내에 미전송하거나 오류전송(적합대상자를 부적합대상자로 전송)한 경우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 시·군·구: 오류 정보 예외 전송
- 미전송 또는 기오류 전송된 서비스 신청정보 또는 등급변경 정보를 행복e음 “예외전송” 버튼을 통해 전송

3. 서비스 가격

1. 개념

- 서비스 가격 : 바우처지원금(정부지원금) + 본인부담액
- 바우처 지원금 : 사업별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 - 바우처 지원금(정부지원금)

2. 가격 설정

- 제공기관은 지역 여건 및 제공인력 수급 및 전문성,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서비스 가격을 설정
- 시·군·구청장은 제공인력 수급, 서비스 수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의 사업별 서비스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한 후 기준정보 변경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인력 전문성, 지역 여건 및 서비스 수급 등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의 사업별 서비스 가격을 조정·승인
-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별 서비스 가격을 공고

3.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설정
 -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가격의 20% 내외에서 대상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되 반드시 부과
 - 다만, 차상위(120%이내), 취약계층 등 10% 미만 설정 가능하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부과

4. 서비스 구매 및 결제

① 서비스 구매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매
 - 1인 2개 이상의 서비스 또는 1가구 2인 이상 서비스 구매 가능
 - 기존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대상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가능
 - 1인에 대하여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및 1가구 내 2인 이상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 단,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중복 수혜 등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② 서비스 추가 구매

-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전액 개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으로 결정
- 서비스 가격
 - 대상자와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도지사(시·도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
- 결제 방법
납부

③ 서비스 비용 결제

- 결제 대상 :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결제
 - 단, 서비스 대상자가 아동, 차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 보호자가 결제 가능
- 결제 방법
 - 기본원칙 :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 예외적 결제방법
 - (소급결제) 바우처 카드 및 결제단말기(전용, 동글이 등) 분실·고장, 신규 제공인력

의 도우미카드 또는 결제단말기 신청 후 미 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를 인정

※ 소급결제 시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CAP)으로 인한 익월 바우처 미생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ARS-결제) 통신음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 월까지 결제단말기 또는 바우처카드 수령이 불가하여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ARS 결제 방법

1588-1688(KB 콜센터)로 전화 ⇒ 『2번』 누름 ⇒ 『1번』 누름 ⇒ 『KB 바우처 가맹점 번호』와 『#』 누름 ⇒ 『카드번호 16자리』 누름 ⇒ 『카드유효기간』 누름(년월) ⇒ 『사업구분 코드』 누름(바우처 서비스코드 4자리 추가 입력) ⇒ 결제 단위 누름(결제금액) ⇒ 승인 번호 안내 ⇒ 영수증 발급 및 보관

유선 결제(상담원 통화) 방법

1588-1688(KB 콜센터)로 전화 ⇒ 『2번』 누름 ⇒ 『9번』 누름 ⇒ 『KB 바우처 가맹점 번호』와 『#』 누름 ⇒ 상담원과 연결 후 상담원의 요청에 따른 정보전달(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 승인 번호 안내 ⇒ 영수증 발급 및 보관

- ARS 영수증 서식 (예시)

유선결제용(제공기관용)		유선결제용(수혜자용)	
가맹점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바우처카드번호		바우처카드번호	
유효기간	월 년	유효기간	월 년
코드번호		코드번호	
결제금액		결제금액	
승인번호		승인번호	
거래일시		거래일시	
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홍길동	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홍길동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전화 : 02-1544-0000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전화 : 02-1544-0000	
서명		서명	

□ 결제 시기

- 해당 월 서비스 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 * (예시) 월 4회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2회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50%만 결제하고, 3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3회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결제하고, 제공횟수 등을 나누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15일 이후 결제 원칙
 - * 회당결제 시행 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서비스 제공 회수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을 결제
- 다만 대상자가 중도에 제공기관을 변경하거나, 전출입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일 기준 7일 이내 결제(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에 유의)

□ 월 결제액

- 서비스 제공 비율에 따라 결정
- 해당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산정
 - * (예시) 월 8회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 경우 50%를 초과한 5회이상 서비스 제공시 전액 결제, 기타 1~4회 서비스 제공시 정부지원금의 반액을 결제함
- 단, 이동체험학습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름(서비스 회당 결제 원칙)
 - * 월 지원액 내에서 회당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되(지자체 승인) 서비스 개시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 할 것

〈참고. 이동체험학습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결제 (‘10.10월~)〉

취소 시기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5일전 취소시(숙박여행)	결제 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3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 동 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바우처는 결제 불가)

- 보완 이행계획 제시
-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월 서비스 양의 100%를 미제공한 후 결제한 경우, 보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결제 유효기간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 원칙
-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익월까지 결제 가능
-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은 중지 처리 가능
- * 단, 자격상실 처리를 위해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2개월 연속 미사용'으로 중지 및 전송 처리를 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바우처 이용 실적이 없는 대상자 현황을 수시로 점검, 자격 중지 등 조치를 통해 서비스 미이용자의 자격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 불가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
- * 서비스 미이용자 정보는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에서 조회 가능

5.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① 주요 사례

□ 서비스 이용자 부정사용

- 바우처 카드를 양도, 매매하는 경우
- 제공기관(제공인력)과 모의하여 바우처 카드를 부정사용을 도와주거나 제공기관(제공인력)의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을 묵인하는 행위
- * 바우처 카드를 보유만 하고 있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정조치됨

□ 서비스 제공기관 부정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월별 정 부지원금 전부를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이용자로부터 수거하여 제공업체 혹은 제공인력이 보유·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보유만 하고 있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정조치됨

- 바우처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의 양도, 매매로 인해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모의 혹은 묵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2] 적발시 조치

□ 바우처 카드 부정행위

- 제공기관의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해당지역 내 사업 참여제한(최장 2년) 등 조치가능
- 바우처 카드의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제공기관에 대하여 2년간 제공기관 지정 금지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지정취소를 선택하여 처분가능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하고, 부당이득 환수금은 관리원 별도 계좌에 입금

□ 기타 위반행위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실 관계 확인 후 경미한 경우 주의·경고 처분
- 중대한 사안의 경우 사업자 선정절차에 준하여 지정취소 시행

지정취소 시 유의사항

- 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협약체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협약체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정에 준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②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사업자의 지정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제공기관의 소명의견을 참고해야 함(서면원칙 대면가능)

* 지정취소 절차는 지정취소권자의 판단에 따라 간소화 가능

※ 지정취소 사후조치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 후 시·도지사, 관리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함

- 지정취소 및 관할지역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제공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월부터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지정취소 등의 경우 서비스 결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 이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전국사업자의 관할지역 내 사업참여 제한

- 시·군·구청장은 관할지역내 지역선택형 전국사업자의 불이익 처분 대상행위를 적발한 경우, 지정취소권자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역내에서 해당기관의 동 사업 참여 제한을 결정할 수 있음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잔여기간은 보장하되, 신규 대상자의 이용만을 금지하는 지역 내 사업참여 부분제한 조치 가능
- 사업 참여 제한 기한은 원칙적으로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2012년 1월말까지이나, 하반기 적발 또는 위반행위가 과중할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도 가능

지역내 사업 참여 제한 관련 행정절차

- ① 현장점검, 이용자전화 실태조사(전수 혹은 표본조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② 지역사업자 지정취소절차에 준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협의회에서 심의(대면 또는 서면)하되 해당 사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것(대면 또는 서면)
 - ③ 관할지역 내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으로 심의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에 제한승인 요청
 - 지역내 사업참여 제한 또는 부분제한 여부, 사업 참여 제한 기간 명시
 - * 사건경위 보고서, 심의결과보고서, 해당 업체의 확인서 및 의견서 등 첨부
 - ④ 보건복지부의 승인 및 관할지역내 사업참여 제한 지자체 통보
 - ⑤ 보건복지부 승인 후 해당 시·군·구청장은 사업참여제한 대상 제공기관(본사 및 해당 지점·지부 등)에 대해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보
- *이용자불편 최소화를 위해 1개월 내외의 경과기간 설정 후 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 및 신고 상담전화 (02-6006-5002) 운영(사회서비스관리원)
 -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관리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 포상금 지급(관리원)
 - 관리원은 제공인력(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VIII | 제공기관 및 인력

1. 제공기관 지정

① 지정주체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사업 제공기관은 시·도개발 사업은 해당 시·도지사, 시·군·구개발 사업 및 공동개발 사업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
- 이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사업자”로 직접 지정
- 전국사업자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역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 가능
- 사업 제공기관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지정하되 1개 기관만이 참여한 경우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추가 지정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제공기관 선정 불가
* 예 : 서비스 제공기관이 00맹아원이고, 주된 수요자가 00맹아원 학생인 경우
- 각 기관별 시설·인력 등을 고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 원칙적으로 참여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은 간소화 가능

② 지정 대상 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대학 등 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해당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이 경우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사업 수행 및 참여기관 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 부여
 - 서비스 제공 대금은 주관기관에 지급하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에 대한 수입 배분 등 총괄
 - * 예 : A기관은 놀이치료, B기관은 상담교육, C기관은 음악치료를 담당하는 경우 A, B, C기관 중 전체를 조정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주관 기관 명의로 바우처 가맹점 등록)

3] 지정 절차

- 시·군·구청장은 대상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
 -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전년도 사업 실적 재평가 등을 통해 지정 기간 연장 여부 결정
- 공모에 의한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 결과 신청기관이 2개소 이하이거나 서비스 공급 가능 기관이 명확한 경우,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 기간 및 절차 등 간소화 가능
 - 신청 기관의 자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시·군·구청장이 자체 고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 일정 단축 등은 가능하나, 이 경우 참여가능기관에 대한 사전 홍보 철저
 - 서비스 특성상,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토록하고, 주관기관과 협력기관간의 협약내용을 별첨으로 제출
 - * 주관기관은 공동참여기관을 대표하고 총괄책임을 지며, 바우처 비용청구 및 협약에 따른 비용정산의 주체가 됨(참여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불가)

제공기관 지정 시 제출 서류 (예시)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16)
- ② 공동사업의 경우 기관간의 협약 내용, 협력기관의 주요 현황
- ③ 사업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 서식 17 및 서식 18)
- ④ 서비스 내용 요약서 (☞ 서식 19)
- ⑤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 ⑥ 전년도 사업 참여 실적관련 보고서(전년도 사업참여 기관에 한함)
- ⑦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협회 등 총괄 기관 외에 회원사,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기관 포함) 등

-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 지정시 별도의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5인이상으로 구성
 - 신청기관의 서비스 공급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양질의 서비스 공급 능력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모두 선정 원칙
- 심사결과 적격한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일정 지정 조건이 부과된 지정서 교부(☞ 서식 20)
 - 지정된 제공기관은 지정 후 즉시 KB를 방문하여 바우처 가맹점 등록
- 최소한의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사업당 2개 이상 기관 지정 원칙

제공기관 지정 행정처리 절차

- ① 제공기관 지정(시도 및 시군구) ⇒ ② 지정서 교부(시군구) ⇒ ③ 가맹점 등록(제공기관) ⇒ ④ 제공기관 선정결과 보고(시군구→시도→관리원) ⇒ ⑤ 시스템 등록(관리원) ⇒ ⑥ 단말기신청(FDKL)

4 지정 기간 : 지정일 ~ 2012년 1월 31일

2. 제공기관 재지정

1 제공기관 재지정

-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사업 추진 실적, 사업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지정 여부 결정
 -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협의체를 통해 평가
 -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신규 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 가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재지정을 완료 후 사업별 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 및 지정취소 여부를 관리원으로 통보
 - 재지정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 지정서(서식 19)의 지정기간 등을 변경하여 재교부
-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서비스 실적	○ 서비스 제공 실적	40	○ 서비스 대상자 수 ○ 사업비(예산) 대비 이용 실적 ○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탈락율
	○ 일자리 창출 실적	20	○ 일자리 창출 실적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10	○ 제공인력 교육 실시 여부 ○ 제공인력의 근로 조건(임금 수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적립 여부 등)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10	○ 바우처 결제방식 등 사업지침 이행 여부 ○ 서비스 가격의 적정성
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 질 관리	10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이용자 만족도
	기타	10	○ 지자체별 지역실정에 따른 평가기준 추가
합 계		100	

3. 제공기관 인력

① 기본방향

- 시·군·구청장은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 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수요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제공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계획 수립시 저소득 여성(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여성, 노인 등), 지방대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 확충방안을 포함하여 수립

② 제공인력의 역할 및 교육

-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참여, 건강투자, 학습활동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활동
- 전문교육 실시에 의한 서비스 품질향상
 - 제공기관은 기관 자체 실무교육 포함하여 제공기관 실무자 대상 연 15시간 내외 교육
 - * (주요 교육내용) 서비스 품질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조직관리 등
-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등
 - 시·군·구청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내용을 명시하여 제공인력이 사전에 요건을 구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③ 제공인력의 의무

- 이용자 및 가족 등의 욕구에 맞는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 대상자가 욕구 및 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 서비스 제공 시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공급인력이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대상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바우처 서비스 외에 대상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강요 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
-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대상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불가

4] 사업 참여 불가 제공인력

- 자활근로, 복지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 불가
 - 장애이동재활치료 등 타 바우처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4. 제공기관의 의무

① 바우처 가맹점 가입

□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KB 영업점에서 바우처 가맹점 가입 필수

- 가맹점 미가입 시 바우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및 노인돌보미 등 기존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은 가맹점 재등록 불필요

□ 바우처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구분	주요내용
가맹점 가입 신청	○ KB 영업점(해당지역 담당 카드마케팅팀에 전화로 연락하여 처리) * KB 부재지역은 KB 바우처 콜센터로 전화(1599-7900)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업체
가입관련 유의사항	○ 가맹점 신청전에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의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필수 ○ 가맹점번호가 부여되어야 단말기 공급 및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 가능
가맹점 등록확인	○ 신청점 또는 콜센터(1599-7900)를 통한 확인 * 가맹점번호(8자리) 시·군·구에 통보

□ 바우처카드 가맹점 가입 접수서류

기본 서류	법인 추가 서류	위임관계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가입신청서(은행비치) ○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제공기관 지정 지자체에서 교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지급 결제계좌 사본 ○ 대표자 신분증(개인사업자에 한함) ○ 바우처 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 청구(EDC) 신청동의서(은행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위임장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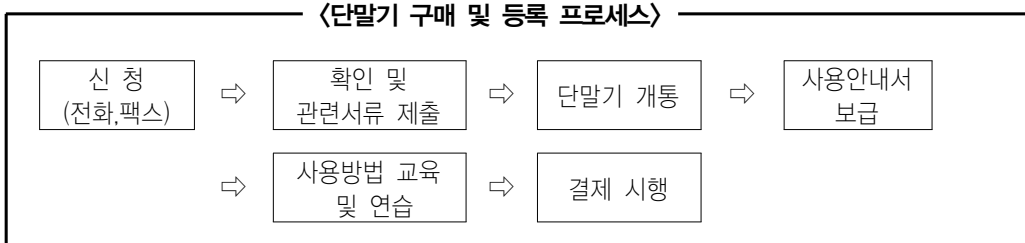
② 단말기 구매

□ 바우처 단말기 구매

-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결제를 위하여 전용단말기를 제공기관에서 구비

* 제공기관에서 유상구매 원칙

□ 단말기 구매 및 등록관리



□ 단말기 신청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바우처단말기 설치 신청	○ 제공기관이 FDKL 고객센터(1544-3850)에 요청 ☞ 관리 대리점 안내 요청(연락처 등)
가입 대상	○ 바우처 가맹점 가입이 완료된 제공기관
설치신청 관련유의사항	○ 무선단말기는 SKT 이동전화가입이 필수적임 ○ 단말기 월 유지보수료 자동이체 신청 ○ 단말기 사전개통을 위해 FAX로 서류 요청(대리점 안내) (직원 방문 후 개통도 가능 : 개통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개통 요청 후 단말기 수령거부 등은 불인정

□ 단말기 유지비용

- (월 유지료) 14,850원 = 통신료 9,350원 + 관리비 5,500원
- (가입비 등) 단말기 개통관련 가입비 등 일체 추가 비용 없음

□ 단말기 보유현황 등록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 등록

③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이용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

- 바우처 사업 수행과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수단
- 바우처 생성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계약대상자관리) 서비스 대상자와의 계약 내용을 입력·관리하고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 확인 가능

- (매출정보확인) “정산내역”에서 매출정보 및 정산내역을 확인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가입(최초 로그인 시 ID생성 방법)
 - 아이디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뒤에서 5자리 입력
-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에서 제공기관 정보를 관리원으로 미통보한 경우
- 제공인력 정보 입력
 - 제공기관은 매월 일자리 현황 및 고용실태, 자격정보 등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www.socialservice.or.kr)에 입력
 - * 매월 3~10일까지 전월 제공인력 정보를 입력
- 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급여정보 등을 등록
 - 인적정보 : 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 자격증정보 :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 급여정보 : 시간당 단가, 월 급여, 보험가입 여부 등

4]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욕구, 일정 등을 고려, 서비스 유형, 방법, 제공횟수 및 제공기간, 금액 등 서비스 실시 방안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업 개시전 제출
 - 주요 내용: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공급인력 확보 및 교육, 바우처 가맹점 가입, 단말기 구매,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서비스 대상자 확보 및 계약, 서비스 대상자 정보 등록, 협력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컨소시엄의 경우) 등(※ 서식27)
 - 작성 시 고려사항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제공계획서 작성
-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5] **제공인력 관리**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홍보
- 서비스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법 준수 의무 등)
 -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외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6] **사업비 관리**

- 본인부담금 부과
 - 서비스 대상자의 구매력을 보충하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의 개념: 서비스 가격 중 바우처 지원금(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서비스 대상자가 부담할 금액
 - 본인부담금의 설정: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가격의 20% 내외에서 시군 구청장이 결정(다만, 차상위(120%이내), 취약계층 등 10% 미만 설정 가능하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부과)
 - * 시·군·구청장은 사업별 서비스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 후 승인
 - 본인부담금 부과시기: 대상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되 서비스 개시 전에 사전 부과
 - 본인부담금 부과방법: 계좌입금 원칙
(현금 납부시 제공기관은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 미부과시 바우처 지원금(정부지원금) 인하 조치
-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당초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서비스가격을 정부지원금 수준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인하 가능
- 제공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지원금 인하 등 조치

□ 본인부담금 환급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량 등을 고려, 본인부담금 환급
 - * 해당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 시는 총 본인부담금의 50%, 50%이하 제공시는 본인부담금의 100%를 당해연도 사업 정산시까지 환급
- 환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업종별 표준약관’ 등 준수
- 단, 아동체험학습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름(서비스 회당 결제를 원칙으로 함)
 - * 월 지원액 내에서 회당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되(지자체가 승인), 서비스 개시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 할 것

<참고. 아동체험학습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결제 (‘10.10.1일~)>

취소 시기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5일전 취소시(숙박여행)	결제 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3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 동 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바우처는 결제 불가)

□ 관리운영비 조달 등

- 제공기관은 바우처 결제 및 추가 구매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비 등 조달
- 제공인력 급여(4대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포함), 전용 단말기 구매·유지,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구매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부담

□ 제공기관이 사회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인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예산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관리·운영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정취소 제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생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7 기타 기관운영 성실 이행

□ 지정 기간 내 사업에 지속 참여

- 사업 중도 포기 희망 시 포기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지정권자에 통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지침 준수

- 동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지정조건,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달되는 각종 지침 준수
- 제공기관 지정시 동 지침의무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보며, 지침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가능

□ 민원관리 기준 마련 등 성실한 민원 응대

-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
-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 등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지정 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참여기관(컨소시엄), 제공인력 등의 의무이행 해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
 -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유도,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
- 정부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이행
 -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성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부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이행
- 서비스 품질 기준 미달
 -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절차 및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예시) 서비스 제공시간 미흡, 필수 제공서비스 미제공 등
- 공정경쟁 질서 위반
 - 부당 경쟁, 과대 광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 지정조건 미이행
 - 제공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 조건을 불이행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기타 관련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IX | 예산 집행 및 정산

1. 개요

- 바우처 발행과 환금,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 자금집행 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사업집행실적 등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비고
대 상 자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제공기관	바우처 가맹점 계약, 단말기 구입,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자금(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전담금융기관 선정·운영, 관리원에 업무위탁·관리감독	
전담금융기관	이해관계자의 금융업무 편익을 위한 계좌 관리 이해관계자간 입·출금 등 금융업무 대행 바우처 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제공기관 비용청구 접수·지급, 관리원과 정산	전자 바우처 사업에 한해 적용
관리원	바우처 정보, 예탁금관리, 자금집행실적 관리, 사업기준정보 관리, 모니터링	

* 전자 바우처 카드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관리원에서 직접 심사 후 지급 결정

2. 사업 예산

- 보조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 기준보조율: 서울50%, 지방70%(성장촉진지역 80%)
- 보조구분: 지자체 경상보조
- 예산 및 사업량: 135,300백만원(국고)
- 시도별 예산내역: 별도 통지

3. 업무위탁 및 비용의 예탁

1] 업무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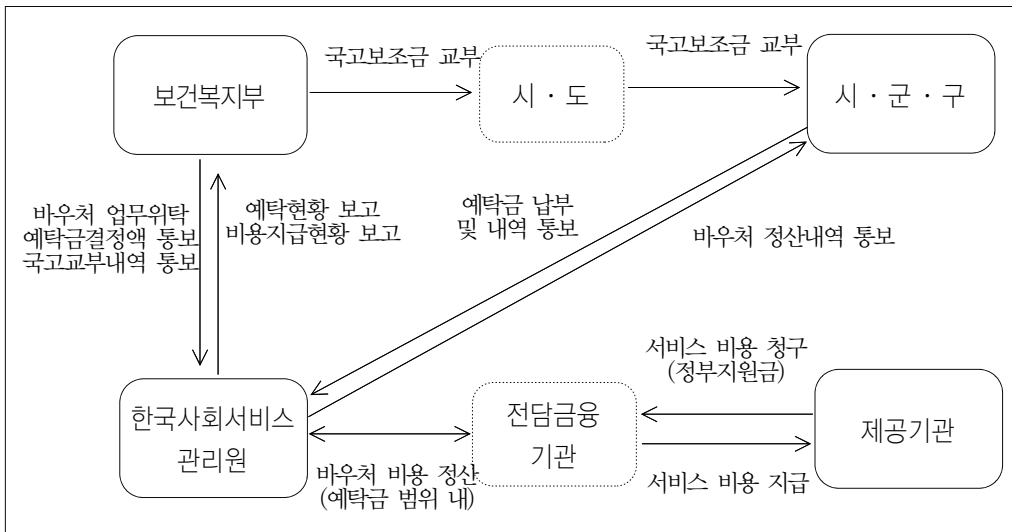
- 위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6항
 -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업무 수행 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비용 지급
 - 관리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시·군·구로부터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비용을 지급

2] 비용의 예탁

- 시·군·구청장은 바우처 서비스 비용의 지급과 정산을 위해 사업비를 관리원장에게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 제6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 시·도지사는 예탁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
-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날짜(매분기 시작 월 20일)까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관리원의 지정계좌에 납부

- 예산 확정 후 즉시 예탁(특히 1월의 경우 1월 20일까지 예탁 완료)
- 바우처 생성 시점에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액이 부족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가함에 유의
 -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 특성상 바우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탁을 아니할 수 있음
- 예탁금 납부통보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정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국고보조금, 지방비 구분)을 관리원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원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예탁금 결정액에 반영

【업무처리 흐름도】



3 본인부담금 징구

- 시·군·구청장은 관리원장에게 사업비를 예탁하는 경우 사업 개시전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구받도록 하여야 함

4. 비용의 지불 및 정산

① 비용의 청구

- 청구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 청구방법 및 결제 원칙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를 통하여 관리원과 연계된 전담 금융기관에 서비스 비용 청구
 - * 단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증서” 등 단말기 이외의 결제수단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제공기관의 서비스 비용 청구
 -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수납하고 정부지원금만 청구
 - 전출,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로 중도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 원칙

② 비용의 지급

- 서비스 비용 청구
 - 서비스 제공기관은 해당 월 서비스 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관리원에 월 1회 청구 원칙
(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지자체에 사전 승인 후 회당결제도 가능)
- 비용의 지급
 - 전담금융기관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제공기관에 대하여 카드수수료 공제 후 차액을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제공기관의 월 결제액은 서비스 제공 비율에 따라 결정
 - 해당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산정
 - * (예시) 월 8회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 경우 50%를 초과한 5회이상 서비스 제공시 전액 결제, 기타 1~4회 서비스 제공시 정부지원금의 반액을 결제함
- 입금내역은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매출 및 정산 > 정산내역조회 > 이용내역 조회

③ 비용의 예외지급

□ 지급대상

-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카드 분실, 전용 단말기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서비스 비용 지급
- 제공기관이 예외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용지급 시 제공기관 현지 실사 등 적정성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지급

□ 업무처리 절차

- 비용 청구 의뢰 :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익월 7일까지 관리원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 문서를 접수
- 비용 지급 심사 : 사회서비스관리원
 - 관리원장은 미결제 사유의 적합성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현지실사 및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해 확인 후 제공기관으로 심사결과를 통보
- 서비스 비용 청구 :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관리원 심사결과 지급이 승인된 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청구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예외청구 > 서비스비용청구
- 비용 지급 : 관리원
 - 관리원장은 제공기관이 청구한 지급 승인 대상자의 서비스 비용을 수수료 공제 후 차액을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 분기별 1회 지급(5월, 8월, 11월, 익년도 2월)

④ 비용의 정산

- 전담금융기관은 집행내역을 관리원에 통보
-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자별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월별 정산

⑤ 기타사항

- 이자수입의 처리 : 연 1회(결산 시)

- 예탁금 결정액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
- 관리원은 이자수입이 각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

□ 회계처리

- 관리원은 매월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 : 매월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 : 매월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 공지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바우처정산 > 월별정산 > 시군구별 정산현황
- 관리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 :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 : 시·군·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게재
-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바우처정산 > 연말정산 > 예탁금정산조회

⑥ 비용의 반환청구 등

- 과대 또는 허위 청구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장은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일수 등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등을 확정, 제공기관에 통보
-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장에게 업무처리 위탁 가능
- 제공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과다 청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거 처리

X | 대상자 관리

1. 개인별 판정 유효

① 판정 유효기간

- 대상자 서비스 지원기간으로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최대 12개월(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10개월)로 함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매월 21일 이전 신청 기준) 익월
 - *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는 시점과는 무관하며 서비스개시월 이후 대상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하며 이용자는 서비스제공 연기를 요구할 수 없음을 이용자에게 필히 고지하여야 함
 - * (예시) '09. 3. 10 신청 전송(바우처 생성 '09. 3. 31)이 이루어진 대상자의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이 8월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월은 4월임
 - 대상자 지원기간 : 기준정보 상에 반영된 사업별·대상자별 지원 기간을 의미
-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기존지역에서 취득한 대상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새로 시작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은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반드시 사업기준정보에 반영
 - * (예시) 시각장애인 인마서비스의 개인별 판정 유효 기간은 6개월임

② 판정 유효기간 연장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도래 시 지자체가 신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재판정 후 최대 1회(12개월) 범위내에서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연장
 - 다만,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아 지자체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승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2회까지 재판정 가능 (대상자별 최대 3년지원 가능)
 - * 최대 2회 재판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은 추후 공지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자 중 1등급 대상자(27천원 지원 아동)의 경우 재판정 절차없이 재신청으로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1회(10개월) 연장 가능
 - ※ 시군구청장은 자체 지침 등을 마련 재판정 실시

2. 개인별 유효기간 재판정

□ 재판정의 개념

- 사업의 1인당 서비스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장이 신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에게 추가(최대 12개월) 연장 지원하는 절차
- 다만,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아 지자체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승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2회까지 재판정 가능 (대상자별 최대 3년지원 가능)

□ 재판정 대상 사업

- 매월 생성되며, 대상자 지원기간이 12월인 사업으로써 치료·교육·건강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지자체장의 신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
 - * (예시) 문제행동이동 조기개입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음악교육) 등
- 익년도 1.15까지 해당 사업 통보 (보건복지부 → 시도 및 시군구)
- 익년도 1.31까지 승인된 사업 통보 (보건복지부 → 관리원)
 - * 관리원은 승인된 사업 변경된 기준정보를 1.31까지 시스템에 반영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도래 시

- 재판정 대상 사업 : 최대 12개월 연장 지원 가능
- 재판정 대상 이외 사업 : 기 서비스 이용자 중 익월 생성자 대비 30%까지 추가 지원 가능. 단 지원 우선순위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함
 - * (우선순위 예시) 취약자(기초수급자, 차상위등), 서비스 미이용자 중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자 등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자동 종료
 - 단, 1등급 대상자(27천원 지원 아동)의 경우 재판정 절차없이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 * (예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09년 8월에 신청하여 9월부터 바우처 생성한 경우 2010년 6월까지만 바우처 생성 후 자동 종료(1등급 대상자는 재신청했을 경우 익월부터 다시 10개월간 바우처 생성 후 종료)

3. 자격 상실

- 개인별 판정 유효 기간 종료한 경우
-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 기간 중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적발
 - * 바우처카드 부정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조치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어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지역에서 취득한 대상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새로 시작
-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하여야 함

4. 자격중지

- 중지시기 :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가 원칙
- 중지절차
 -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서비스 관리원으로 관련 자료를 중지 및 전송

-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유로 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상실 처리 후 즉시 중지됨
- 대상자 통지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통지 가능

5. 전출·입 관리

-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는 종료
 - 이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 가능
 - 다만,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자체 기준 마련 등 대상자의 서비스 재신청 여부는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시 행복e음에서 사회서비스관리원(센터)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 정보(바우처 생성전)는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 ※ 전입지 사군구 담당자가 전출지 사군구에 부적합 처리 요청 불필요

XI | 행정사항

1. 성과 평가

①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

② 평가 방향

- 정량적 지표 위주로 평가하되 사업별 평가 이외에 우수서비스 사례평가 병행
- 복지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고, 연초에 세부 평가지표 제시

③ 결과 활용

- 우수사업(지자체)은 차년도 예산증액,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부진사업은 현장점검 및 컨설팅 통해 성과 개선 유도

【사업별평가 지표(안) 예시】

평가지표	측정 방법
예산집행율	배정액 대비 집행액
사업충실도	총 사업 대비 지자체 주관 현장점검 횟수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민원제기율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제공기관 재지정 여부 등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샘플 조사) - 이용자의 효능감(건강증진 등) 증진 정도 -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고용창출도	사업별 목표인원 대비 월평균 고용인원

※ 구체적 평가기준, 방향 및 지표 등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

2. 사업기준 정보 관리

① **관리주체**: 시·도지사(시도개발) 또는 시·군·구청장(시군구 자체 및 공동개발)

② 기본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업 개시 전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바우처 생성 정보, 바우처 단가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된 사업별 기준정보 및 지침을 개정

- 사업기준정보 및 제공기관정보 등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시스템을 통해 일괄 관리하므로, 지자체에서는 사업기준정보 등을 사전에 확정, 보건복지부에 보고

* 사업별 기준정보는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동 기준정보를 가급적 준수하되, 지역 여건,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정보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후 정보변경 가능

· 다만 바우처 및 단말기 관리, 시스템 적용 등 관련 사항은 변경 불가

③ 주요 정보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바우처 생성 정보, 바우처 단가(본인 부담금 포함) 등 바우처 생성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 사업별 기준정보는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4 처리절차

구 분	주 체	처리 일자	내 용
기준정보 요청	시군구/시도	전월 15일까지	○ 사업 기준(변경) 승인 요청
↓			
기준정보 승인 및 통보	보건복지부	전월 21일까지	○ 기준정보 승인 통보 (지자체, 사회서비스관리원)
↓			
기준정보 전산반영	사회서비스 관리원	전월 말일까지	○ 바우처 통합시스템에 등록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전담금융기관으로 전문 전송
↓			
기준정보 변경여부 확인	시·군·구	전월 말일까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기준정보 반영여부 확인
↓			
변경 정보 적용	시·군·구	해당월 1일까지	○ 기준변경 신청월 22일 이후 신청등록건에 대한 처리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기준정보 적용 예시

- ◇ '10. 2.14 정부지원금을 5만원 → 8만원으로 변경한 경우, 4월 바우처 생성 시 변경된 정부 지원금 적용
- ① 기준정보 전산 반영(2. 28까지) → ② 변경여부·내용 확인(3. 1) → ③ 신규 대상자 입력 및 전송(3.1일 이후) → ④ 변경된 기준정보에 따른 바우처 생성(3. 31) → ⑤ 변경된 기준 정보에 의한 서비스 이용(4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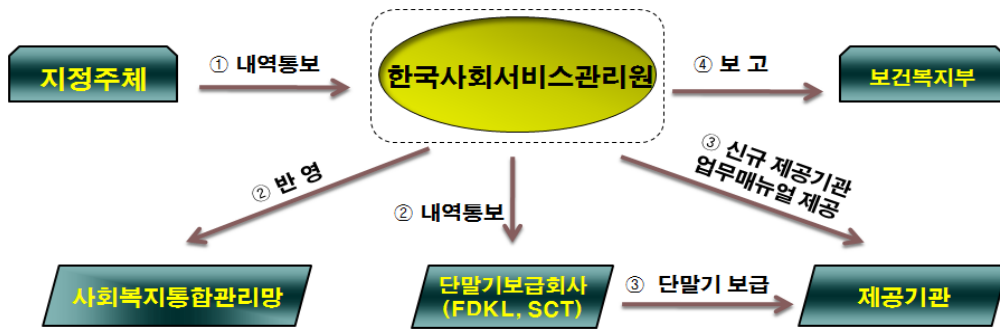
5 기준정보 변경

- 서비스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사업기간내 정보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다만, 예산 조정,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
- 해당 지자체의 책임 하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대상자 변경이나 확대(예 : 노인 → 장애인, 여성 등)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우선 순위 변경
 - 서비스 내용 변경
 - 바우처 지원액, 지원 주기, 지원 횟수 조정
 - 사업명, 사업 개시·종료 시기, 사업 예산 변경
 - 기타 사업의 본질적 내용 및 바우처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경으로 바우처 시스템이나 사업 방식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바우처 방식을 공급자 지원방식으로의 변경은 불가
- 시·도개발 사업은 시·도지사, 시·군·구개발 사업 및 공동개발 사업은 시·군·구청장이 변경 신청함이 원칙
- 변경절차
- 변경 신청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기준 정보 변경이 필요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신청(☞ 서식 21)
 - 시도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직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 16일 이후 신청 시 다음달 적용이 불가함에 유의
 - 변경 내용 검토·승인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 사업 기준 정보 변경 승인 여부·내용 등을 검토
 - ※ 전월 21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및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장에 그 내용을 통보
 - ☞ 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전제로 신청 내용 변경승인도 가능
 - 기준정보 전산반영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장
 - 관리원장은 바우처 통합시스템에 사업 기준정보를 등록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전담금융기관으로 전문 전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전담금융기관은 각 시스템에 변경된 기준정보 등록
 - 기변경 내용 확인·적용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익월 1일 전산 반영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 확인

- 기준정보 변경 내용은 익월 1일 신청·전송부터 적용
 - * 다만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사업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사업비 등)는 관리원 접수일로부터 3일 후 적용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관리원에서 일괄 변경하므로 별도 작업 불필요
- ‘대상자 지원 기간’ 변경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기존 서비스 이용자 일괄 해지 후 재신청
 - * 일괄 해지전 반드시 관리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변경 흐름도】



⑥ 기준정보 작성 요령(☞ 서식6)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서비스 전체 가격
 -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정부지원금(천원) : 서비스 이용자별로 바우처 생성 시 매월 정부가 지원할 금액
 -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한번 설정된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준정보 변경 요청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천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소득 수준·욕구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 차등화 가능
- 대상자별 지원기간: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간 기재
 - 사업별로 최대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의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대상자 자격관리 등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별 지원기간 변경은 불가(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협의 후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 (참고) 대상자 지원기간이 8개월→12개월로 변경시 기존대상자 전체를 중지전송 처리 후 신규로 대상자 정보를 입력·재전송해야 함

□ 생성주기

- 대상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를 의미(1개월 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회 등)

* (예시) 2개월마다 생성되는 바우처의 경우 최초 바우처 생성이 3월인 경우 이후 5월, 7월, 9월, 11월에 각각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 주기가 매월, 1회인 경우를 제외하고, 격월, 분기 등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의 경우 '10년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격 해지 등 별도 조치가 없는 한 '10.2월중 일괄 바우처 생성 예정

* (예시) '09년 10월 신규대상자(3개월마다 바우처생성되는 12개월사업)의 경우 10월, 1월, 2월, 5월, 8월에 바우처가 생성됨

- 사업 관리 용이 등을 위해 가급적 격월이나 3개월 등 주기적 생성은 지양(매월 생성되도록 사업 개발·관리)

□ 소득 : 사업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기재

* (예시)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20%이하 등

□ 연령 : 사업별 대상자 평균 연령 기재

- 서비스 대상자 연령 기재하되, 초등학생, 중학생 등 불명확한 표현은 가급적 지양(8세, 13세 등 명확하게 판별 가능한 기준 설정)

□ 가구특성 : 사업별 대상가구 특성 기재(대상 혼합사업의 경우 주 대상가구로 기재)

* (예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 우선순위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순위 기재

* (예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모부자기정 ③ 차상위계층 등

□ 제공장소 및 방법

-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및 서비스 제공 유형 기재

* (예시) 서비스 제공유형: 집합, 개별 등

- 제공주기: 서비스가 제공되는 횟수 등 기재
* (예시) 3개월마다 1회, 주1회 등
- 서비스 시간(분): 서비스 1회당 소요되는 시간 기재
- 개발주체 : 서비스 실시주체 기재
* (예시) 시도개발(시도전체 시행), 시군구공동개발(2개이상 시군시행), 자체개발
- 제공기관 수(개) : 해당 지자체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수 기재

3. 홍보

1] 개요

-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한 홍보에 중점
- 특히,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제도 내용 및 선정기준·절차를 집중 홍보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2] 홍보방법

- 보건복지부
 - 공익 캠페인성 광고 : 지하철 LCD, 옥외 전광판, TV 자막광고 등 다중매체 활용
 - 리플렛, 포스터, 기타 홍보 유인물 등 제작, 지자체를 통해 배포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 설명회 개최 / 반상회보 게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활용
-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및 다중장소에 현수막·홍보탑 등 설치, 전광판 광고·버스 광고 활용
 - 홍보 리플렛(읍·면·동 비치 및 수요자 가구 배포)
 - 홍보 포스터(읍·면·동, 보건소 등 관공서 및 공동주택 등 부착)
 - 전단지(개별 수요자 가구 발송)

- 기타 소책자, 안내문, 기타 홍보 유인물 자체 제작 배포
- 케이블 TV, 지역유선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 매스컴 활용
- 지방의회·주민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설명회 개최
- 반상회보 배포
-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 시·군·구별 각종 주민 행사, 리·동장회의 등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에 필요한 잠재적 서비스 대상자 명단과 연락처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약서 수령)

□ 유관기관 협조

- 학교 등 서비스 대상자 홍보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4. 교육

① 교육대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 공무원 및 업무보조인력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② 교육방법

□ 보건복지부

- 시·도, 시·군·구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교육 실시
- * 인력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등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집합 교육 실시

□ 시·군·구 : 읍·면·동 공무원 및 업무보조 인력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 *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최대 활용

③ 교육내용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전반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
 - 인력 관리 및 기관 운영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단말기 사용 및 비용의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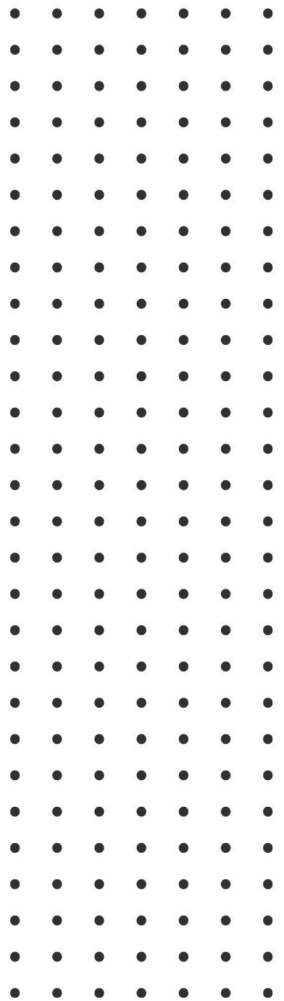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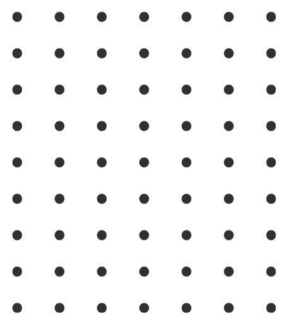
5. 예산 조정

- 사업 시행 중 개별사업 예산의 10% 내외에서 복지부 사전 승인없이 지자체 판단 하에 자율 조정 가능

* 단, 지역개발형 사업과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간 예산 조정은 불가

3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편)



목 차

〈주요 변경 내용〉	85
〈적용 시기 및 경과 조치〉	86
I.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87
II. 지역개발형 사업	94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다문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외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 다문화가 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의한 가족으로 정의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의 의무 오·벽지·제공기관 미관리 지역 또는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할 경우 별도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 등 본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의 의무 오·벽지·제공기관 미관리 지역 또는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경 우 별도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 등 본 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본사 단 독 해결이 어려운 경우 아동인지협의 체에서 서비스 제공 대책 마련 	
문제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지원대 상자 선정시 욕구판정을 위한 전문가 추 천서류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병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임상심리상담사· 학교교사 추천서 등 	
청년 사업단 지원 사업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업 1청년사업단 지원(p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이상 지정하되 1개 기관만이 참 여한 경우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추 가 지정
	제공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20~30대 청년 위주 고용(p142) ○ 사업단장, 전담인력 등 사업관리인력 채용 의무(p144) ○ 사업 실무 교육을 포함하여 연 20시 간 내외 교육(상·하반기 각 10시간) (p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폐지 ○ 기관 자체 실무교육 포함하여 제공 기관 실무자 대상 연 15시간 내외 교육 ○ 서비스 제공인력 선발 및 관리는 지 역개발형 지침을 적용
	사업비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별로 대학은 산학 협력단 등을 통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산학 협력단 회계 내 별도 계정으 로 관리(p145) ○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해 사 업 설계시 총 사업비의 70%이상 편 성 원칙(p145)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3%이내 편성 가능 등(p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의 경우 동 지침 적용,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운영 ○ 폐지 ○ 폐지(지역개발형 지침 적용)

적용 시기 및 경과 조치

① **적용 기준** : 동 지침은 서비스 개시일 기준 2011년 2월 1일 이후 이용자에 한해 적용

②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경과 조치

□ 기본방향

- 기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지역개발형 사업 지침을 적용

□ 주요 변경사항

- 1사업 1청년사업단 지원은 2010년에 한해 지원, 2011년부터는 2개이상 제공기관 지정 원칙 적용
- 대졸 20~30대 청년의 고용비율 및 인건비 편성 비율 규정 폐지, 바우처 운영 관리 및 사업비 관리는 지역개발형 지침 적용

I |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1. 사업목적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2.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
 - 2005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3. 서비스 내용

- 제공주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이상 파견(방문 1회당 20분 내외)
 - ① 책 읽어주기
 - 프로그램에 따른 관련책 읽어주되 시간범위내 가급적 전체내용을 읽어줌
 - * 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목록체크등의 서비스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
 - * * 고가의 책인 경우 대여서비스도 가능
 - ② 도서지급 및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등 독후활동 실시
 - ③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실시
 - 양서나 독서 지도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 지도

□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 개별수요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 정부지원금 차등화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입소아동,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아동, 양부모 모두 장애인인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1인당 월 27천원

- 그 외 아동 : 1인당 월 20천원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외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의한 가족을 의미

□ 재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 단, 1등급 대상자(27천원 지원 아동)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 서비스 개시월 기준 산정

* (예시) 2010년 8월 신청(9월 서비스 개시) 시 2011년 6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개인별 판정 유효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 시 바우처 지원 중단

4. 서비스 대상자

①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함

- ①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 ② 가정위탁아동
- ③ 국내입양 아동
- ④ 기초생활수급자
- ⑤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 ⑥ 조손가정 아동
- ⑦ 다문화가정 아동
- ⑧ 한부모가정 아동
- ⑨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⑩ 그 외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부모의 장애 여부, 연령 등 추가 우선순위 부여 가능

② 대상자 선정권자 및 시기

- 선정권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선정
 - 선정시기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과 선정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연중 신청·선정가능
 - 익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선정결과는 매월 21일 18시 이전까지 관리원으로 전송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한 내 선정결과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익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5. 자격관리 등

①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서비스 개시월 기준 최대 10개월 지원 원칙
 - 단, 1등급 대상자(27천원 지원)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기준, 1등급 대상자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09년 1등급 대상자(27천원 지원)로 10개월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 아동
- '09년 이전 기타 대상자(20, 25천원 지원)로 10~12개월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아동 중 신청일 현재 1등급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1등급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양부모 모두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개인별 판정 유효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바우처 지원 중단
- 다만 전액 본인부담을 전제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 지속 이용은 가능

2] 전출입

- 서비스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종료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
 - 전입지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자체 판단 가능
 - * (예시) 전입자가 서비스 이용내역 50% 이상인 경우 재신청 불가 등 자체기준 설정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지원액 (정부지원금)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20,000원 또는 2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등급	대상자	1인당월지원액
1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27천원
2등급	그 외 아동	20천원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타 기관 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 바우처의 생성
 - 매월 말일에 익월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포인트 생성

2]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
-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계약에 의해 결정

7.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1]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제공기관의 종류 및 지정권자
 -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전국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사업자가 있음
 - * 지역사업자 지정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제공기관 지정권자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한 제공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음
- 지정시기 및 기간
 - 전국사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기에, 지역사업자의 경우 각 지역여건에 따라 수시로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 가능
 - 제공기관 지정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공기관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임

② 서비스 제공기관 준비사항

□ 단말기 등 결제수단 확보

- 제공기관은 단말기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바우처 결제방식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국사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기에 바우처 단말기 확보 등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바우처 단말기 확보 등 결제방식 확보실적을 익년 제공기관 선정 심사기준으로 활용 가능

□ 서비스 매뉴얼 마련 및 제출

- 제공기관은 연령별 대상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요청할 경우 즉시 서비스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지정취소 등 조치 가능

③ 제공기관의 의무

□ 해당 사업을 선택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 오·벽지·제공기관 미관리 지역 또는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경우 별도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 등 본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본사 단독 해결이 어려운 경우 아동인지협의체에서 서비스 제공 대책 마련

□ 지정기간 내 사업에 지속 참여

- 사업 중도 포기희망 시 포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 보건복지부 통보

□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및 제공인력에 대한 지침 교육 의무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결제방식 준수(지정된 단말기 구매 및 유지관리 등) 포함

□ 바우처 관리 매뉴얼, 관련 서류 구비 및 보관 의무

- 바우처 관리 매뉴얼을 모든 지사(지부)에 비치

* 매뉴얼 포함 내용 :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요약 제공, 필수 서류 공통 서식, 바우처 결제방식 안내 등

- 지침상 필요서류(서비스 제공계약서, 서비스제공기록지), 결제 관련 서류(바우처 결제 영수증,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구비 및 보관

□ 지사(참여기관), 공급인력의 부정행위, 의무이행 해태 등에 대한 책임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구축
- 서비스 제공인력의 최저임금,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법 의무, 관련 지침 준수, 보건 복지부 및 지자체 업무에의 협조 의무

4] 제공기관의 의무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 독서지도사, 교사,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 보유자
-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조건
 - 제공기관은 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서비스 공급인력 노무관리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II | 지역개발형 사업

1. 사업 개요

① 추진 배경

- 지역사회에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도모
-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등 보편적 복지 구현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②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 7

-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19조의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시행규칙제19조의5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사업개시월~2012.1.31
- 사업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비만아동건강관리, 장애아동렌탈서비스 제외)
(단,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사업수행기관

-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제공기관

□ 사업시행절차

【사업 흐름도】



4. 향후 운영 방안

□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집중 육성지원

- 사회적 수요 높고 성장가능성 있는 4대 분야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중점 육성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위해 품질기준을 제정
- 사회서비스 품질자율인증제도 시행 등 품질관리 활용 점진적 확대

□ 청소·방역관련 서비스 구조조정

- '12년부터 청소·방역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
- * 2011년 현재 9개 시도 16개 사업 시행 중
- 각 지자체는 신규 신청 중단 조치 등 사업경과 조치 마련

2. 신규사업 개발

※ 지자체는 주민수요 반영하여 신규사업 개발

1. 개발주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2 개발절차

□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파악 (1단계)

- 파악시 고려사항
 - 주민 수요 및 지자체별 가용 자원, 공급 여력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 지역 내 대상자 수, 수요량 등 수요 및 서비스 공급 가능 기관 현황
 - * 대상자 참여 저조 가능성 또는 수요 초과시 대책
 -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 및 대책
 - * 공급기관의 덤핑 또는 담합 등에 의한 질 낮은 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대책 등
 - 서비스 가격 등을 통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필요시 간이 설문조사 실시(기존 공급기관, 읍면동 공무원 등 활용)

□ 사업 아이템 발굴 (2단계)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
- 활용도구
 - 시·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와 사전 접촉, 적극적인 의견 수렴
 - 지역사회서비스혁신협의체 등 신규 인프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생활지원 네트워크 등 기 구축된 민관협력 인프라를 적극 활용
 -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예시사업, 타 지자체 사업 사례 등 활용
 - * 필요시 주민행정 전산망, 복지행정 정보망, 각종 통계자료, 연구자료, 정책자료 및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참여를 통해 민간의 아이디어 충분히 활용
- 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따라 사업계획 작성
 - * 작성 양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상세 자료, 기타 첨부자료
 - 사업 계획서는 당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가 총괄 취합
 - * 단,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 조정 가능
 - 시·도 및 시·군·구별 가급적 1개 이상 작성 원칙
 - * 발굴된 사업 아이템이 2개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군·구) 또는 사회복지위원회(시·도) 등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부여

□ 사업 선정 (3단계)

- 지자체(시·도) 심사: 지자체(시·도)는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예산액을 결정하여 복지부에 제출

【시도 신규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개요(안)】

- ① 구성 : 민간위원 및 공무원 포함 5인 이상
- ② 심의기준 : 복지부 제시 선정심의 기준 준용
- ③ 심의사항
 - ▶ 일반분야 : 사업별 지원 우선순위, 예산액
 - ▶ 자율공모분야 : 시도별 3개 이내 복지부 제출 사업

- 복지부 심사: 복지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계획을 심의자료로 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전체 신규 사업 예산 규모 중 10%는 기초 지자체의 직접 자율 공모 사업으로 배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직접 심사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 우선순위는 최대한 반영하되 필요시 사업 계획 보완 또는 예산 조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선정' 가능
- 사업선정 기준
 -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일자리 창출효과, 수요자 효과성,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

신규사업 추진 업무처리 절차

- ① 사업 수요과약(지자체)
- ② 사업 개발안내 및 신청 접수(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사업 예비검토 등을 거쳐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 사업 선정 결과 통보(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후 1차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④ 사업 신청서 제출(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는 자체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 신청서 보건복지부 제출
- ⑤ 사업 선정 결과 통보(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차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⑥ 사업 기준정보 확인(지자체)

- 사업명, 서비스내용, 제공주기,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대상자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바우처 총 생성횟수 등

*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항은 사업코드 부여 전 정정 요청 (지자체 → 보건복지부)

⑦ 사업 제공기관 지정 및 가맹점 등록

제공기관 지정(시도 및 시군구) ⇒ 지정서 교부(시군구) ⇒ 가맹점 등록(제공기관) ⇒ 제공기관 선정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관리원) ⇒ 시스템 등록(관리원) ⇒ 단말기신청(FDKL)

- 지정주체 : 사업 시행 지자체(시도개발 : 시도, 시군구개발 : 시군구)

- 지정방법 : 공모에 의해 2개 이상의 기관 지정 원칙

⑧ 대상자 선정 및 전송(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서비스 개시 전월 21일(18:00)까지 대상자 전송

⑨ 서비스 실시

③ 신규사업 개발시 주요 유의사항

- 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확인(고용 창출 효과, 시장 형성 가능성, 사회투자적 성격, 보건복지성 등)

- 후순위 또는 배제되는 사업 분야 해당 여부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아 기 수행 중이거나 지방이양사업

-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하드웨어 구축이 주목적인 사업

- 현행 법령이나 제도와 상충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사업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사업

* (예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맹이원이고, 주된 수요자가 ○○맹이원 학생인 경우와 같이 특정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정책 실효성이 현저히 낮거나, 자체 시장형성 효과가 미약한 사업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거나 기존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범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기 구조조정 사업) 경로당 소득, 도서대여, 장애인 운전면허, 영어캠프 등 정책실효성이 낮고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 우려가 높은 사업

- 기존 사업 또는 서비스와의 차별성

- 서비스 제공의 절실성·긴급성

- 해당 서비스 공급이 수요 충족에 적절한지 여부 등
 - 특히,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급하여 서비스를 구매토록 할 수 없는 사업은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에 유의(※ 민간 부문 참여 정도를 평가시 반영)
 - ☞ 붙임1 (지역개발형 사업선정 기준안) 참고

4 신규사업 공모

- 공모기간 : 연초(구체적인 일정은 복지부에서 결정 통보)
- 공모분야
 - 시도에 지원 우선순위 결정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의 창의적 사업 발굴을 유도하기 위하여 2개 분야(일반, 자율공모)로 구분

분 야	주요 대상사업	시도 심의	절 차
일 반	우선지원 사업 중심	있음	작성(자자체) → 1차 심의(시도) 제출(시도) → 선정(복지부-심의위원회)
자율 공모	지자체 발굴 유망서비스 중심	없음	작성(자자체) → 제출(시도) → 선정 (복지부-심의위원회)

- 공모시 제출서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서식 25), 사업계획 요약서(☞서식 26), 사업계획서 (☞서식27) 상세 자료, 기타 첨부자료
 - ☞ 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10.12.27)에서 확인 가능

5 10대 유망사회서비스

- 목적
 - 잠재 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를 유망사회서비스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 내용: 4대 분야 10대 사업

유 형	서비스명	
아동발달 지원	① 아동 발달지원, ③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② 아동정서발달지원 ④ 인터넷·게임중독아동 치유
노인 건강생활 지원	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⑥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⑦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⑧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가정 지원	⑨ 나홀로 아동 가정돌봄	⑩ 정신건강 케어 -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 자살위험 노인 정신건강 증진

□ 지원방향: 예산 우선 지원 및 서비스 표준화·매뉴얼 지원

- '11년도 기존사업 지원연장 및 신규 사업 공모 시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중점 지원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매뉴얼 통해 서비스의 질 제고

붙임1) 신규사업 선정 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 아이템		10	-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반영 여부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해당 서비스의 질실성·긴급성 - 사회투자 측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의 부합여부 등
계획 내용의 충실성		15	-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 계획 내용의 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 성과 지표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서비스 대상(수요)	15	- 서비스 대상과 사업내용과의 부합성 - 수요 추계의 객관성·합리성(근거자료 제시 등) - 선정 기준의 적정성 - 수요자 확보 전략의 타당성 - 조사·선정절차의 실현가능성 등
	서비스 공급	15	- 공급 가능 기관 및 공급 인력의 적정성 - 지역내 서비스 공급 능력 및 공급인력 확보 정도 - 공급인력 및 기관 확보 전략의 타당성 -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 방안 등
	바우처 지원단가 산정의 적절성	10	- 서비스 가격 산정의 타당성 - 바우처 지원 단가 및 본인 부담 산정의 적절성 등
	장애요인 극복 방안	5	- 사업 추진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의 타당성 등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10	- 민간기업 및 제3자의 대응투자 여부 및 규모 등 - 지자체 전담조직 정비 및 업무조정 여부(지역사회서비스혁신협의체 등)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지 등(광역 또는 초광역 사업 여부, 지자체 자체부담 여부)
민간 참여		5	- 지역내 민·관·산·학 입체적 참여여부 - 사업 개발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민간 참여 여부 등
기대효과		15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질 개선정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규모(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등) - 사업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부가적 효과 등
총점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당해연도(차수) 신규사업 선정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10대 유망사회서비스 표준모델(안)

1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를 통한 조기 선별과 함께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1) 발달검사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0~6세 2) 중재 대상 (*문제행동조기개입,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 기타 : 영유아 발달검사(기초발달선별검사, 기초언어 발달검사, 초기인지 검사, 영유아기 정서·사회성발달 검사) 결과, 2개 이상 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이는 영유아, 기관장이나 교사의 추천에 의해 중재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1) 제공기관 : 대학, 비영리법인 등 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기관 2) 제공인력 ▶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교육, 심리, 체육, 아동, 복지 관련 4년제 졸업 혹은 졸업예정자로서 영유아 및 발달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 MMPI 검사 결과 임상전문가에 의해 영유아 관련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1) 발달검사서비스 가격 : 112천원 (정부 10만원, 본인 12천원) / 1회 2) 중재 서비스 가격 : 월 200천원 (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32회, 4개월 ※ 발달검사와 중재서비스는 각각 별도의 사업코드로 관리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발달검사 : 전문가에 의한 1:1 발달검사를 통해 해당 영유아가 가지는 기초발달 수준(운동발달 포함),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발달 수준 파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3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본 서비스</td> <td>발달기초검사 (운동발달검사 포함)</td> <td>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발달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20분~40분)</td> </tr> <tr> <td>언어발달 검사</td> <td>영유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 발달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40분~1시간)</td> </tr> <tr> <td>초기 인지검사</td> <td>유아의 초기인지에 해당하는 시·지각 발달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30분~40분)</td> </tr> <tr> <td>정서·사회성 발달검사</td> <td>영유아에 대한 정서·사회성발달검사로서 주양육자 및 교사에 의한 평정 후 전문가에 의한 분석</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10분~20분)</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 발달검사 결과에 대한 개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발달검사 결과에 대한 부모 및 기관 상담</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고서 1회 / 수시 상담</td> </tr> </tbody> </table> ▶ 잠재적 발달지체위험 영유아 중재 서비스 : 4개 영역 발달검사 결과, 2개 이상에서 유의미한 지체를 보이는 영유아, 기타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의 잠재적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조기중재(교육) 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3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 서비스</td> <td>전문가에 의한 조기중재 프로그램 실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2회 (회당 60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서비스</td> <td>- 매월 중재서비스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 보고서 월 1회 - 수시 부모상담</td> </tr> </tbody>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영유아를 대상으로 4개 영역의 전반적 발달검사 실시 ② 2단계 : 개별 영유아에 대한 발달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후 학부모에게 전달 및 상담 ③ 3단계 : 발달선별검사결과 2개 영역 이상에서 지체를 보인 영유아에 대한 조기중재 서비스 ④ 4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중재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검사 (운동발달검사 포함)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발달검사	1회 (20분~40분)	언어발달 검사	영유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 발달검사	1회 (40분~1시간)	초기 인지검사	유아의 초기인지에 해당하는 시·지각 발달검사	1회 (30분~40분)	정서·사회성 발달검사	영유아에 대한 정서·사회성발달검사로서 주양육자 및 교사에 의한 평정 후 전문가에 의한 분석	1회 (10분~20분)	기타 서비스		- 발달검사 결과에 대한 개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발달검사 결과에 대한 부모 및 기관 상담	보고서 1회 / 수시 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조기중재 프로그램 실시	주 2회 (회당 60분)	기타 서비스	- 매월 중재서비스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월 1회 - 수시 부모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검사 (운동발달검사 포함)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발달검사	1회 (20분~40분)																											
	언어발달 검사	영유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 발달검사	1회 (40분~1시간)																											
	초기 인지검사	유아의 초기인지에 해당하는 시·지각 발달검사	1회 (30분~40분)																											
	정서·사회성 발달검사	영유아에 대한 정서·사회성발달검사로서 주양육자 및 교사에 의한 평정 후 전문가에 의한 분석	1회 (10분~20분)																											
기타 서비스		- 발달검사 결과에 대한 개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발달검사 결과에 대한 부모 및 기관 상담	보고서 1회 / 수시 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조기중재 프로그램 실시	주 2회 (회당 60분)																												
기타 서비스	- 매월 중재서비스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월 1회 - 수시 부모상담																												

②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8세~13세 (지역에 따라 연령 기준 상향 조정 가능) -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우선 지원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년 이상의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사회공헌 또는 음악치료 수행 기관 이거나, 최근 2년간 전문 클래식 공연 실적이 50회 이상인 기관 ②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연간 교육 매뉴얼 제출이 가능한 기관 ③ 서비스 대상자 수 대비 30% 이상의 제공인력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프로그램 - 관련학과(심리 및 음악·미술 등 예술치료)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1,000시간 이상 보유자 ② 클래식프로그램 - 관련 악기 학사 학위 이상 전공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월 20만원 내외 (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래식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3명 이하)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소그룹 단위 제공 가능)	주 1회 (회당 60분) 주 1회 (회당 60분)
기타 서비스	1.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4.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5.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2)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③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기타 :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거나, 교육기관장이나 교사의 추천에 의해 조기개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예 : 민간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대학교부설기관 등) ▶ 인력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기준에 준하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2년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재활치료 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인정 자격증 목록은 '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안내 p.87~91 표1 참조)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p>월 12~16만원 (정부 128천원 / 본인 3~4만원) / 12개월</p> <p>* 서비스 가격은 월 16만원 내외로 설정하고 본인부담금은 일반 20%, 수급자 10%로 조정</p>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td> <td> 1.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시 10분 내외로 제공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4회 이상 (회당 50분내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 서비스</td> <td> 1.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2.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3. 부모훈련: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td> <td style="text-align: center;">선택적 제공</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1.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시 10분 내외로 제공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50분내외)	부가 서비스	1.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2.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3. 부모훈련: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선택적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1.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시 10분 내외로 제공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50분내외)								
부가 서비스	1.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2.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3. 부모훈련: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선택적 제공								

4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인터넷(게임) 과다사용 및 중독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게임)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② 서비스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 기타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여성부)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또는 기관장이나 교사의 추천에 의해 인터넷(게임) 중독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 인력 :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 전공자 등 자격증 보유 또는 학위보유자 중 인터넷중독 관련 상담과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을 이수한 사람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만원 내외(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회당 50분 내외) 제공 ▷ 부모교육,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 서비스 효과성 검사 등 기타서비스 추가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기본 서비스</td> <td>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td> <td>1회</td> </tr> <tr> <td>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td> <td>1회 (1일, 9시간)</td> </tr> <tr> <td>3. 심리상담 - 연령에 따른 치료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개인상담, 집단상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움 대상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td> <td>주1회 (회당 50분, 6개월)</td> </tr> <tr> <td>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td> <td>1회 (1박2일)</td> </tr> <tr> <td>5.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회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td> <td>주1회 (3개월)</td> </tr> <tr> <td>6.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td> <td>주1회 (3개월)</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1회) 2.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3.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검사 (2회) </td> <td></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유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연령에 따른 치료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개인상담, 집단상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움 대상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회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6.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부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1회) 2.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3.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검사 (2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연령에 따른 치료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개인상담, 집단상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움 대상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회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6.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부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1회) 2.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3.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검사 (2회) 																			

5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연령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소유자 등 						
④ 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운동 위주 서비스 : 월 12만원 내외(정부 11만원, 본인 1만원) / 12개월 ▶ 기타 체조, 에어로빅 등 중심 : 월 7만원 내외(정부 6만원, 본인1만원) 12개월 ※ 서비스 내용에 건강상태 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 가격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인상, 감액)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공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기본 서비스</td> <td> <p>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전체 대상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p>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소 운동: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 발달 지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 3회 (회당90분)</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 서비스	<p>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전체 대상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p>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소 운동: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 발달 지원 	주 3회 (회당9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 서비스	<p>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전체 대상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p>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소 운동: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 발달 지원 	주 3회 (회당90분)					

⑥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 ▷ 연령 등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만 65세 이상 노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법인 ▷ 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관광 관련 업무 유경험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1~2급 장애인 및 장기요양보험1~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장애3급 이하 및 장기요양보험4~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차량 1대당 간호(조무)사 1명 의무 탑승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제공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되, 당일 프로그램은 기본형 정부지원금의 50%만 지원(본인부담금 동일), 2박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천원(정부지원금 155천원, 본인 25천원) / 년 1회 ▷ 2등급 :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천원(정부지원금 140천원, 본인 25천원) / 년 1회 ▷ 3등급 : 만65세 이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천원(정부지원금 125천원, 본인 25천원) / 년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중 1등급은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대상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대상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td> <td>연 1회 (1박2일)</td> </tr> <tr> <td>부가 서비스 (대체서비스)</td> <td>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td> <td>연 1회 (당일 또는 2박3일)</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중 1등급은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대상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대상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서비스)	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연 1회 (당일 또는 2박3일)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중 1등급은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대상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프로그램 : 대상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서비스)	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연 1회 (당일 또는 2박3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② 2단계 : 여행서비스 대상자 선정 ③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 : 만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보조, 요양보호사, 기기 리폼 관련 자격자 						
④ 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0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상이) / 12개월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9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120%이하 : 정부지원금 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초과 : 정부지원금 6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서비스 내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서비스</td> <td>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td> <td style="text-align: center;">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⑧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개설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업무 수행 가능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 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인력 : 안마사 자격을 갖춘 안마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4회 제공) 월 130천원 내외 (정부 120천원, 본인 10천원) / 6개월 (월2회 제공) 월 68천원 내외(정부 60천원, 본인 8천원)/ 6개월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4~5천원 부과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1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data-bbox="448 1310 1316 1697">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노인</td> <td>·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td> <td rowspan="3">주 1회 (회당 1시간)</td> </tr> <tr> <td>장애인</td> <td>·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td> </tr> <tr> <td>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 <td>·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전신안마·마사지·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										

9 나홀로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양육취약 가정의 나홀로 아동에 대한 돌봄을 통해 범죄 발생 예방 및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7세~만12세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일정시간 보호자가 없는 나홀로아동 (만7세 미만이지만, 초등학생인 경우 서비스 대상에 포함)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아동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독서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등 아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시간당 3천원~6천원(정부지원금 2천원, 본인부담금 4천원) ※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일 제공시간 설정(6시간 이내)에 따른 서비스가격 산정 가능, 제공시간에 따른 제공인력 4대 보험 등은 관련법령의 기준내용 준수 (예. A시는 주5일, 일3시간 1:1 돌봄서비스로 설정 : 월60시간 서비스제공으로 서비스가격은 6천원×주5일×일 3시간×4주=360천원(정부 120천원, 본인240천원),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 (교사와 아동의 비율)</th> <th>구분</th> <th>서비스 가격</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 1</td> <td>시간당 단가</td> <td>시간당 6천원</td> <td>2천원</td> <td>4천원</td> </tr> <tr> <td>(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td> <td>월 720천원</td> <td>월 240천원</td> <td>월 480천원</td> </tr> <tr> <td rowspan="2">1 : 2</td> <td>시간당 단가</td> <td>시간당 4천원</td> <td>1천5백원</td> <td>2천5백원</td> </tr> <tr> <td>(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td> <td>월 480천원</td> <td>월 180천원</td> <td>월 300천원</td> </tr> <tr> <td rowspan="2">1 : 3</td> <td>시간당 단가</td> <td>시간당 3천원</td> <td>1천원</td> <td>2천원</td> </tr> <tr> <td>(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td> <td>월 360천원</td> <td>월 120천원</td> <td>월 240천원</td> </tr> </tbody> </table>	유형 (교사와 아동의 비율)	구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 1	시간당 단가	시간당 6천원	2천원	4천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720천원	월 240천원	월 480천원	1 : 2	시간당 단가	시간당 4천원	1천5백원	2천5백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480천원	월 180천원	월 300천원	1 : 3	시간당 단가	시간당 3천원	1천원	2천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360천원	월 120천원	월 240천원
	유형 (교사와 아동의 비율)	구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 1	시간당 단가	시간당 6천원	2천원	4천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720천원	월 240천원	월 480천원																												
1 : 2	시간당 단가	시간당 4천원	1천5백원	2천5백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480천원	월 180천원	월 300천원																													
1 : 3	시간당 단가	시간당 3천원	1천원	2천원																													
	(예) 주5일, 일 6시간설정시	월 360천원	월 120천원	월 24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50% 감면(감면액은 정부지원금에 포함)																																	
1)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교사가 1명~3명 이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및 교육 * 1:2, 1:3돌봄의 경우, 서비스 대상 아동 간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장소(가정)를 정해야 함 ▶ 아동 연령에 따른 기초돌봄 서비스, 수준별, 개별 욕구에 따른 교육서비스 제공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서비스</td> <td>안전등·하교(원) 지원 ▶ 돌봄교사 동행 등하교(원)</td> <td rowspan="3">주 5일, 1일 6시간 - 이용시간 별도 설계 가능 - 월정액은 20일 기준으로 부과</td> </tr> <tr> <td>일상생활지원 ▶ 연령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지도, 식습관지도(간식제공, 식사제공)</td> </tr> <tr> <td>방과후 학습지원 ▶ 학습 및 인지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숙제지도, 독서지도</td> </tr> <tr> <td rowspan="3">부가서비스</td> <td>부모코칭서비스 ▶ 부모가 가진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부모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돕는 양육코칭서비스</td> <td rowspan="3">선택적 제공</td> </tr> <tr> <td>엄마랑 나랑 ▶ 신체, 음악, 미술, 놀이를 통한 아동과 부모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td> </tr> <tr> <td>Family Book Day ▶ 가족이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동, 가족 성장 프로그램</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안전등·하교(원) 지원 ▶ 돌봄교사 동행 등하교(원)	주 5일, 1일 6시간 - 이용시간 별도 설계 가능 - 월정액은 20일 기준으로 부과	일상생활지원 ▶ 연령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지도, 식습관지도(간식제공, 식사제공)	방과후 학습지원 ▶ 학습 및 인지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숙제지도, 독서지도	부가서비스	부모코칭서비스 ▶ 부모가 가진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부모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돕는 양육코칭서비스	선택적 제공	엄마랑 나랑 ▶ 신체, 음악, 미술, 놀이를 통한 아동과 부모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	Family Book Day ▶ 가족이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동, 가족 성장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안전등·하교(원) 지원 ▶ 돌봄교사 동행 등하교(원)	주 5일, 1일 6시간 - 이용시간 별도 설계 가능 - 월정액은 20일 기준으로 부과																														
일상생활지원 ▶ 연령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지도, 식습관지도(간식제공, 식사제공)																																	
방과후 학습지원 ▶ 학습 및 인지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숙제지도, 독서지도																																	
부가서비스	부모코칭서비스 ▶ 부모가 가진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부모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돕는 양육코칭서비스	선택적 제공																															
	엄마랑 나랑 ▶ 신체, 음악, 미술, 놀이를 통한 아동과 부모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																																
	Family Book Day ▶ 가족이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동, 가족 성장 프로그램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신청-상담(사회복지사 상담으로 개별욕구 파악), 제공계약서 제공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교사매칭) ③ 3단계 :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모니터링-결과피드백, 서비스 재조정 후 지속실시 ⑤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조사																																	

10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단, 정신장애인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인력 :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례관리자 자격증 보유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0만원 내외 (정부 18만원 / 본인 2만원~4만원) / 12개월 * 서비스 가격은 월 20만원 내외로 설정하고 본인부담금은 일반 20%, 수급자 10%로 조정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4회 (회당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위기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 료서비스를 연계 증상관리(약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 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일상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
부가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 자살 고위험군(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로써 만65세 이하 ▶ 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현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관 및 민간기관 - 내부 또는 외부에 수퍼바이저를 두어 수행인력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인력 ① 자격요건 - 사정평가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자살예방사업 수행 3년 이상 경력자) - 사례관리요원 : 사회복지사, 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예: AIR 교육 20시간, QPR 과정 20시간) 단, 사업은 먼저 시작하고 서비스 제공 이전에 교육 이수 가능 ② 인력배치 기준 - 사정평가요원은 상근으로 반드시 1명 이상 배치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월 16만원 내외 (정부 15만원 / 본인 1만원) / 12개월 * 본인부담금은 필요시 ±50%까지 조정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p>▶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대상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방법 : 대면상담 및 전화관리, 단 대면상담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제외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또는 서비스프로그램(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연계 </td> <td>월10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td> <td>선택적 제공</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등록, 상담, 선별검사 ② 2단계: 전문상담 ③ 3단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⑤ 5단계: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대상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방법 : 대면상담 및 전화관리, 단 대면상담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제외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또는 서비스프로그램(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연계	월10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	부가 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대상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방법 : 대면상담 및 전화관리, 단 대면상담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제외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또는 서비스프로그램(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연계	월10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								
부가 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붙임3) 사업 계획 작성 CHECK LIST

주요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점검 여부
사업계획 일반	① 사업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사업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사업 아이템 발굴	① 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하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 투자 이외에 민간 주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③ 국가, 공동모금회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사업아이템-대상자 중복 가능성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⑤ 사업 추진시 장애 요인은 없는가? 극복가능한 장애요인인가?	□예, □아니오
	⑥ 단편적·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서비스인가?	□예, □아니오
	⑦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예, □아니오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는 얼마나 되는가?	□예, □아니오
	②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계층은 누구인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욕구, 예산확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④ 선정 기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②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절차가 적절하며, 공정한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있는가?	□예, □아니오
	④ 서비스 질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⑤ 대상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은 충분히 확보가능한가?	□예, □아니오
	⑥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해 별도 자격 구비, 교육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원가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③ 덤핑 판매, 독점 등 공정 경쟁 저해 요소는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① 성과 목표가 사업 취지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측정 주기, 시기, 방법 등)	□예, □아니오
	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한가?(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활용)	□예, □아니오

붙임4) 지역개발형 주요 유형별 표준화 모델(11개 유형)

※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사업내용변경 및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향후 모델 수정 후 각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②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 ③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분야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체험의 기회제공을 통해 학습 역량 및 아동의 미래비전 형성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 우선지원 ▷ 연령 : 만8세에서 13세 이하의 자녀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인문학, 관광학, 아동청년학, 자연과학, 사회복지전공자 등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p>월 10만원 내외 (정부 9만원, 본인 1만원) / 8개월</p> <p>* 회당 결제원칙 적용: 월 지원액 내에서 회당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되(지자체가 승인), 서비스 개시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할 것</p>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과정에 나오는 주요시설 및 다양한 인물과의 만남을 통한 아동의 학습역량 향상 및 아동의 미래비전 형성 지원 ○ 필요시 월2~3회 서비스를 월1회 1박 2일 캠프체험서비스로도 제공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 (1~7 혼합 또는 택일)</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예술 체험서비스 : 문화, 예술 영역 관련 교육, 실습, 견학 체험 등 2. 과학체험서비스 : 과학기술에 대한 견학, 모형조립, 제작, 관찰, 과학실험 체험 등 3. 역사체험서비스 : 역사박물관 유적지 견학, 체험 등 4. 환경체험서비스 : 환경 체험 꺾별탐사, 답사 체험 등 5. 사회체험서비스 : 사회문제 인식 형성을 위한 견학, 역할극, 캠페인 체험 등 6. 농업체험서비스 : 지역 특정 농산물이나 작업 실험, 실습, 관찰학습 체험 등 7. 맞춤형체험서비스 : 이용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체험 서비스 </td> <td>월 2~3회 (회당6시간)</td> </tr> <tr> <td>부가 서비스 (기본서비스대체 서비스)</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캠프서비스 : 당일이 아닌 1박 2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td> <td>월 1회 (회당12시간)</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재요구조사 <p>* 체험활동 참여결과 부모에게 통보</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7 혼합 또는 택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예술 체험서비스 : 문화, 예술 영역 관련 교육, 실습, 견학 체험 등 2. 과학체험서비스 : 과학기술에 대한 견학, 모형조립, 제작, 관찰, 과학실험 체험 등 3. 역사체험서비스 : 역사박물관 유적지 견학, 체험 등 4. 환경체험서비스 : 환경 체험 꺾별탐사, 답사 체험 등 5. 사회체험서비스 : 사회문제 인식 형성을 위한 견학, 역할극, 캠페인 체험 등 6. 농업체험서비스 : 지역 특정 농산물이나 작업 실험, 실습, 관찰학습 체험 등 7. 맞춤형체험서비스 : 이용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체험 서비스 	월 2~3회 (회당6시간)	부가 서비스 (기본서비스대체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캠프서비스 : 당일이 아닌 1박 2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월 1회 (회당12시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7 혼합 또는 택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예술 체험서비스 : 문화, 예술 영역 관련 교육, 실습, 견학 체험 등 2. 과학체험서비스 : 과학기술에 대한 견학, 모형조립, 제작, 관찰, 과학실험 체험 등 3. 역사체험서비스 : 역사박물관 유적지 견학, 체험 등 4. 환경체험서비스 : 환경 체험 꺾별탐사, 답사 체험 등 5. 사회체험서비스 : 사회문제 인식 형성을 위한 견학, 역할극, 캠페인 체험 등 6. 농업체험서비스 : 지역 특정 농산물이나 작업 실험, 실습, 관찰학습 체험 등 7. 맞춤형체험서비스 : 이용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체험 서비스 	월 2~3회 (회당6시간)								
부가 서비스 (기본서비스대체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캠프서비스 : 당일이 아닌 1박 2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월 1회 (회당12시간)								

④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부모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연령 : 만 3세~12세의 다문화가정의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한국어전공자, 한국어 보조 교사 수료자, 독서지도사 등 아동관련 자격증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월 12만원 내외 (정부 11만원, 본인 1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분됨 ○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유아기본형(언어중심형), 유아기본형(일상생활중심형) 아동기본형(언어중심형), 아동기본형(일상생활중심형) 아동확대형(토달서비스형)으로 분류되어 제공. ○ 이용자는 이 중 5가지 유형의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우리말 배우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한글교육 -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 만 4세)) </td> </tr> <tr> <td>일상생활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td> </tr> <tr> <td>학습지원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제 관리 - 학교 수업관리 - 부모 교육 - 관련 정보제공 </td> </tr> <tr> <td>정서 지원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 문화 체험 -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우리말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한글교육 -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 만 4세))	일상생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학습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제 관리 - 학교 수업관리 - 부모 교육 - 관련 정보제공 	정서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 문화 체험 -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우리말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한글교육 -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 만 4세))											
일상생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학습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제 관리 - 학교 수업관리 - 부모 교육 - 관련 정보제공 												
정서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 문화 체험 -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 												

⑤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가정의 기초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 학습, 정서 등의 일상생활관리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및 아동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연령 : 만 5~15세 이하 아동가구의 부모, 자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사회복지, 교육, 심리 전공 이수자로 코칭훈련을 받은 30세 이상 또는 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월 24만원 내외 (정부 20만원, 본인 4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돌봄 서비스로 소년소녀가장,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식사 챙기기 등 기초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토요일에 출근하여 아동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놀토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가정내 돌봄 및 외출 동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구분</th> <th>서비스</th> <th>서비스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부모대상 '라이프 코칭'</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정보 코디 네이터</td> <td>각종 사회서비스 정보제공</td> <td>서비스 신청자가 구청 방문시 최초 1회</td> </tr> <tr> <td>맞춤형 사회서비스 설계 서비스 모니터링</td> <td>정보제공 후 서비스 설계 월1회 기관방문 또는 가정방문 /회당1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아동 양육코칭</td> <td>부모 양육방식 코칭</td> <td>주1 회 가정방문/ 회당 2시간</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아동대상 '기초돌봄'</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양관리</td> <td>식사 챙기기</td> <td>주5회 가정방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생관리</td> <td>세수, 양치, 머리감기 충치관리(구치관리)</td> <td>- 이용가능시간 오후 6시~10시 까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관리</td> <td>숙제·인터넷이용 지도</td> <td>- 이용시간 별도 설계</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아동대상 '놀토서비스'</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놀토돌봄</td> <td>식사챙기기</td> <td>1일 가정방문</td> </tr> <tr> <td>목욕탕 함께 가기</td> <td>- 이용시간 아침 9시~저녁 6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놀토외출</td> <td>외출 동행하기 (체험학습 등)</td> <td>1일 외출도우미 - 이용시간 조정</td> </tr> </tbody> </table> <p>* 유형A : 라이프 코칭 + 기초돌봄 ** 유형B : 라이프 코칭 + 놀토서비스</p>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구분	서비스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부모대상 '라이프 코칭'	정보 코디 네이터	각종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자가 구청 방문시 최초 1회	맞춤형 사회서비스 설계 서비스 모니터링	정보제공 후 서비스 설계 월1회 기관방문 또는 가정방문 /회당1시간	아동 양육코칭	부모 양육방식 코칭	주1 회 가정방문/ 회당 2시간	아동대상 '기초돌봄'	영양관리	식사 챙기기	주5회 가정방문	위생관리	세수, 양치, 머리감기 충치관리(구치관리)	- 이용가능시간 오후 6시~10시 까지	생활관리	숙제·인터넷이용 지도	- 이용시간 별도 설계	아동대상 '놀토서비스'	놀토돌봄	식사챙기기	1일 가정방문	목욕탕 함께 가기	- 이용시간 아침 9시~저녁 6시	놀토외출	외출 동행하기 (체험학습 등)	1일 외출도우미 - 이용시간 조정
구분	서비스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부모대상 '라이프 코칭'	정보 코디 네이터	각종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자가 구청 방문시 최초 1회																														
		맞춤형 사회서비스 설계 서비스 모니터링	정보제공 후 서비스 설계 월1회 기관방문 또는 가정방문 /회당1시간																														
	아동 양육코칭	부모 양육방식 코칭	주1 회 가정방문/ 회당 2시간																														
아동대상 '기초돌봄'	영양관리	식사 챙기기	주5회 가정방문																														
	위생관리	세수, 양치, 머리감기 충치관리(구치관리)	- 이용가능시간 오후 6시~10시 까지																														
	생활관리	숙제·인터넷이용 지도	- 이용시간 별도 설계																														
아동대상 '놀토서비스'	놀토돌봄	식사챙기기	1일 가정방문																														
		목욕탕 함께 가기	- 이용시간 아침 9시~저녁 6시																														
	놀토외출	외출 동행하기 (체험학습 등)	1일 외출도우미 - 이용시간 조정																														

⑥ 부모학교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가족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연령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예비부모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사회복지 및 가정학 전임강사 이상자 및 가족치료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20만원 내외 (정부 17만원, 본인 3만원) / 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예비부모의 가족 안에서의 역할정립 및 역할훈련에 중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서비스</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유형검사 서비스 : 초기 가족 상담 서비스와 성격유형 검사(MBTI등)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분류된 유형에 따라 자기 및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1회기) 2. 가족역할정립서비스 :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을 정립을 위해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이해에 대한 교육서비스 (3회기) 3.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 관계향상을 위해 참여자 가족을 초대하여 전문 레크리에이션 체험프로그램 (1회기) 4. 부모역할훈련 : 부모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자녀 이해, 부모들의 코칭기법,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역할에 관한 전문 교육서비스 (3회기)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월 4회 (총 8회기/ 회당 120분)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초기상담(서비스 욕구 조사) ○ 2단계 : 성격유형검사(MBTI 검사 등) : 서비스이용자의 성격유형검사 ○ 3단계 : 서비스 제공내용 확정(가족 의사소통, 가족참여 프로그램, 부모 관계향상) ○ 4단계 : 가족과의 통합프로그램 실시, 지속적인 이용만족도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유형검사 서비스 : 초기 가족 상담 서비스와 성격유형 검사(MBTI등)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분류된 유형에 따라 자기 및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1회기) 2. 가족역할정립서비스 :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을 정립을 위해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이해에 대한 교육서비스 (3회기) 3.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 관계향상을 위해 참여자 가족을 초대하여 전문 레크리에이션 체험프로그램 (1회기) 4. 부모역할훈련 : 부모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자녀 이해, 부모들의 코칭기법,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역할에 관한 전문 교육서비스 (3회기) 	월 4회 (총 8회기/ 회당 12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유형검사 서비스 : 초기 가족 상담 서비스와 성격유형 검사(MBTI등)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분류된 유형에 따라 자기 및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1회기) 2. 가족역할정립서비스 :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을 정립을 위해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이해에 대한 교육서비스 (3회기) 3.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 관계향상을 위해 참여자 가족을 초대하여 전문 레크리에이션 체험프로그램 (1회기) 4. 부모역할훈련 : 부모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자녀 이해, 부모들의 코칭기법,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역할에 관한 전문 교육서비스 (3회기) 	월 4회 (총 8회기/ 회당 120분)					

⑦ 저소득 장애인·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장애인·노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연령 : 65세 이상 노인, 기타 장애인 및 산모는 연령기준 없음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소유자 등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월 19만원 내외 (정부 18만원, 본인 1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470 882 576 927">구분</th> <th data-bbox="579 882 1182 927">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185 882 1323 927">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0 931 576 1630"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579 931 1182 1178">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대상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td> <td data-bbox="1185 931 1323 1630" rowspan="3">주 3회 (회당90분)</td> </tr> <tr> <td data-bbox="579 1182 1182 1373">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td> </tr> <tr> <td data-bbox="579 1377 1182 1630">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대상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주 3회 (회당90분)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노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전체 대상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 측정결과와 함께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분기 1회) - 유산소 운동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볼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평형성 및 교차성의 발달 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 및 요가 실시(필라테스) 	주 3회 (회당90분)							
	2.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신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⑧ 저소득가정 렌탈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 (장난감 대여) 아동 성장에 적합한 놀이교육 및 장난감 대여를 통해 정상적 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의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 (장난감 대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7세 미만의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장애인활동보조 및 요양보호사 자격자 ▶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기준 없음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대여) 월 10만원 내외 (정부 8만원, 본인 2만원) / 12개월 ▶ (장난감 대여) 월 3만원 내외 (정부 2만5천원, 본인 5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휠체어, 장난감 등을 대여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도모 <table border="1" data-bbox="478 1173 1321 167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휠체어 렌탈서비스</td> <td> 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지구 렌탈·리폼 서비스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2. 장애아동양육코칭 서비스 - 장애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해 상담 및 코칭 </td> <td style="text-align: center;">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난감 대여서비스</td> <td> 1. 대여서비스 -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 대상 서비스 2. 양육코칭 서비스 -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장난감 선정과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코칭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월 2회 (월수량 한정)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휠체어 렌탈서비스	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지구 렌탈·리폼 서비스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2. 장애아동양육코칭 서비스 - 장애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해 상담 및 코칭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장난감 대여서비스	1. 대여서비스 -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 대상 서비스 2. 양육코칭 서비스 -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장난감 선정과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코칭	월 2회 (월수량 한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휠체어 렌탈서비스	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지구 렌탈·리폼 서비스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2. 장애아동양육코칭 서비스 - 장애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해 상담 및 코칭	렌탈 12개월 (최대 2회) 리폼 연 3회								
장난감 대여서비스	1. 대여서비스 -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 대상 서비스 2. 양육코칭 서비스 - 아동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장난감 선정과 양육 및 놀이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코칭	월 2회 (월수량 한정)								

⑨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고령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노후대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내 ▶ 연령 : 65세 노인 또는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인력 :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관련 자격소지자 혹은 관련교육훈련 이수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월 18만원 내외 (정부 16만원, 본인 2만원)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및 은퇴자에게 삶에 대한 자기성찰과 노후 비전의 성취를 위한 내적 동기 활성화를 꾀하는 개별 라이프코칭과 균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재무설계프로그램으로 구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라이프 코칭</td> <td>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서비스 제공 (1:1 위주)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 1회 (회당 1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무 설계</td> <td>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2단계: 대상자별 노후 재무설계 ○ 3단계: 대상자별 라이프코칭 제공 ○ 4단계: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사업평가 ○ 5단계: 사후관리(DB 구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라이프 코칭	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서비스 제공 (1:1 위주)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주 1회 (회당 1시간)	재무 설계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라이프 코칭	심리적으로 복잡한 감정을 겪을 수 있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서비스 제공 (1:1 위주) 1. 자아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 관계 기술 3. 노후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주 1회 (회당 1시간)							
재무 설계	급변하는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1. 돈을 불리는 재무관리가 아닌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 2. 개별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합한 재무 제표 분석 등 재무상담								

⑩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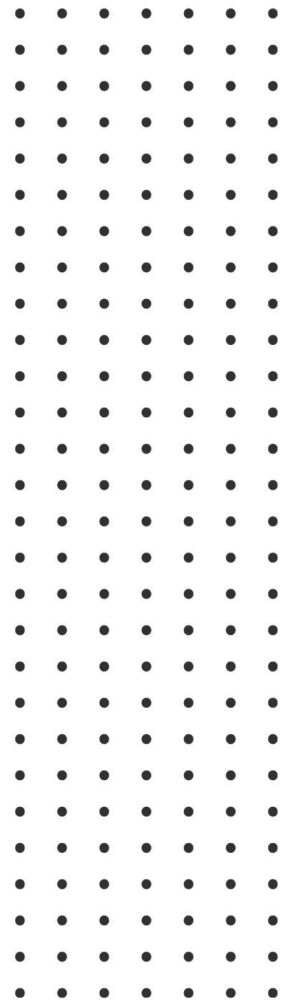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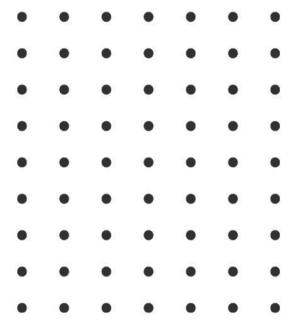
항목	내 용									
① 목적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별도설정 가능), ▷ 연령 : 만 5세~12세 이하 ▷ 신체적 특성 : 경도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신규모델)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운동처방, 영양지도, 종합체력 측정, 아동학부모 건강·영양교육실시, 비만캠프 등의 서비스 및 신체측정(매월) 후 학부모 통보, 성과평가(분기) 등의 행정역량 구비업체 - 단순 스포츠 시설업체 (스포츠 센터 및 학원, 헬스클럽 등) 제외 ▷ 인력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월 6만원~10만원 내외 (서비스 내용별 상이)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기존 모델</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처방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공급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시점 또는 필요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운동지도중심, 체육전문가 중심 집합서비스 </td> <td>주 2회 (회당 50~60분)</td> </tr> <tr> <td>신규 모델 (기존모델을 수정, 2010년 이후 적용)</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 - 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 - 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td> <td>주 2회 (회당 50~60분)</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존 모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처방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공급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시점 또는 필요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운동지도중심, 체육전문가 중심 집합서비스 	주 2회 (회당 50~60분)	신규 모델 (기존모델을 수정, 2010년 이후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 - 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 - 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주 2회 (회당 50~6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존 모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처방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공급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시점 또는 필요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운동지도중심, 체육전문가 중심 집합서비스 	주 2회 (회당 50~60분)								
신규 모델 (기존모델을 수정, 2010년 이후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 - 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영양관리강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 - 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지자체 신규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주 2회 (회당 50~60분)								
2)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2단계: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3단계: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 4단계: 사후관리(DB 구축) 									

⑪ 아동 리더쉽 증진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아동발달검사(심리검사) 및 리더쉽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기 올바른 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아동 ▷ 연령 : 만7세~12세 (필요시 연령기준 상향조정 가능) *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심리·정서상 문제를 보이는 아동 추천 받아 대상자 모집 												
③ 제공기관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전문기관간 협약에 의해 서비스 제공가능) ▷ 인력 : 심리학, 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등 관련학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월18만원 내외 (정부 16만원, 본인 2만원) / 3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검사(심리검사)를 통해 정상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외적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리버쉽, 사회적 의사결정, 문제해결기술 증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서비스</td> <td> 1. 발달진단 프로그램 (첫째달 실시, 지역에 따라 다른 측정도구 사용 가능) - CBQ(Child Behaviour Questionnaire) :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측정 -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 운동기능에 대한 적응행동 측정 - KEDI(Individual Basic Learning skills test) 기초 학습능력 측정 - PEP(Psycho - Educational Profile) 학습에 문제를 가진 아동의 행동과 능력을 평가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1회 (방문/집합)</td> </tr> <tr> <td></td> <td> 2.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둘째달 및 셋째달 실시) - 자기조절 기술 : 대인관계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사결정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기술 - 사회적 인식과 집단 참여기술 : 타인들로부터의 신뢰, 도움, 칭찬을 받는 기술, 타인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현명하게 친구 선택하기,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회 (회당 2~3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서비스</td> <td> 1. 가족참여프로그램 : 가정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 및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참여프로그램 실시, 아동발달진단 결과 설명등 교육 </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1~2회 (회당 2시간)</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초기상담(추천 받은 자를 중심으로 상담) 실시 ○ 2단계: 대상자 선발 ○ 3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프로그램 성과 측정 ○ 4단계: 측정결과 보호자에게 통보 및 지속적 사후관리(모니터링)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발달진단 프로그램 (첫째달 실시, 지역에 따라 다른 측정도구 사용 가능) - CBQ(Child Behaviour Questionnaire) :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측정 -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 운동기능에 대한 적응행동 측정 - KEDI(Individual Basic Learning skills test) 기초 학습능력 측정 - PEP(Psycho - Educational Profile) 학습에 문제를 가진 아동의 행동과 능력을 평가 등	월1회 (방문/집합)		2.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둘째달 및 셋째달 실시) - 자기조절 기술 : 대인관계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사결정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기술 - 사회적 인식과 집단 참여기술 : 타인들로부터의 신뢰, 도움, 칭찬을 받는 기술, 타인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현명하게 친구 선택하기,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등	월 2회 (회당 2~3시간)	부가서비스	1. 가족참여프로그램 : 가정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 및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참여프로그램 실시, 아동발달진단 결과 설명등 교육	총 1~2회 (회당 2시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발달진단 프로그램 (첫째달 실시, 지역에 따라 다른 측정도구 사용 가능) - CBQ(Child Behaviour Questionnaire) :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측정 -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 운동기능에 대한 적응행동 측정 - KEDI(Individual Basic Learning skills test) 기초 학습능력 측정 - PEP(Psycho - Educational Profile) 학습에 문제를 가진 아동의 행동과 능력을 평가 등	월1회 (방문/집합)											
	2.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둘째달 및 셋째달 실시) - 자기조절 기술 : 대인관계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의사결정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기술 - 사회적 인식과 집단 참여기술 : 타인들로부터의 신뢰, 도움, 칭찬을 받는 기술, 타인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현명하게 친구 선택하기,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등	월 2회 (회당 2~3시간)											
부가서비스	1. 가족참여프로그램 : 가정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 및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참여프로그램 실시, 아동발달진단 결과 설명등 교육	총 1~2회 (회당 2시간)											

부록

공 통 서 식



[신청 및 결정 (사회복지통합망 공통서식)]

- 【서식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 【서식 2】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제1호의3)
- 【서식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변경) 신청서(별지제1호의4)
- 【서식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지서(별지제6호)
- 【서식 5】 이의신청서(별지제12호)

IV. 부록(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²⁾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³⁾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 ⁴⁾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 유아학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의 사항
<p>1. 처리기한은 보장구분 항목에 따라 상이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장애인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p>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육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p>2-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형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p> <p>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p> <p>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p> <p>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p> <p>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p> <p>8.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적용 할 수 있습니다.</p> <p>9.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p> <p>10.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1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p>
<p>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p>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흥광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4) 「농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6) 「신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 1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4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유아교육법」 제26조의2 및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3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획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1.1.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아이즐거웁카드)	지원대상자	출생 순위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영유아(0~4세), 유아학비(3~4세) <input type="checkbox"/> 만5세아보육·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보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방과후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영유아(0~4세), 유아학비(3~4세) <input type="checkbox"/> 만5세아보육·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보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방과후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영유아(0~4세), 유아학비(3~4세) <input type="checkbox"/> 만5세아보육·교육 <input type="checkbox"/> 다문화보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방과후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 시간(일)	<input type="checkbox"/> 월27시간 (9일) <input type="checkbox"/> 월36시간 (12일)	서비스 유 형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주간보호			
	구분		서비스시간	<input type="checkbox"/> 가사지원 <input type="checkbox"/> 간호간병 <input type="checkbox"/> 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청요건 (1개 선택)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차상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최상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차상위 이하 장애등급 1~3등급)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input type="checkbox"/>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자		특례신청여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특례(독거) (<input type="checkbox"/> 실제 독거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상 독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 조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여부	<input type="checkbox"/> 기초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미수급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간질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가구유형(독거여부) 변화 <input type="checkbox"/> 연령 변화(아동→성인) <input type="checkbox"/> 기능상태 변화(의사 소견서 첨부)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지원대상자	장애 유형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장애 등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input type="checkbox"/> 4급 <input type="checkbox"/> 5급 <input type="checkbox"/> 6급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언어치료 <input type="checkbox"/> 미술치료 <input type="checkbox"/> 음악치료 <input type="checkbox"/>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언어 발달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부모 정보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진단 <input type="checkbox"/> 언어치료 <input type="checkbox"/> 청능치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		자동차	배기량 (<input type="checkbox"/> 2,500cc 이상 <input type="checkbox"/> 2,500cc 미만) 평가액 (<input type="checkbox"/> 3,00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3,000만원 미만)					
	출산 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 개시일	년 월 일				
	신생아/ 산모	<input type="checkbox"/> 단태아 <input type="checkbox"/> 쌍생아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산모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건강관리 필요자 (해당자만)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input type="checkbox"/> 회귀난치성질환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여성장애인 산모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자 가정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 회서 비 투 자 사 업	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지역선택형 (<input type="checkbox"/> 아동인지향상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역개발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유아교육법」 26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input type="checkbox"/> 결정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세대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청결과											
조사심의결과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내 및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자립,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도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자립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입금금액</td> <td style="width: 15%;">본인</td> <td></td> </tr> <tr> <td>계좌번호</td> <td>배우자</td> <td></td> </tr> </table>				입금금액	본인		계좌번호	배우자	
입금금액	본인										
계좌번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비스 이용 및 제공기관]

- 【서식 6】 사업 기준정보 관리(양식)
- 【서식 7】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 【서식 8】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 【서식 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 【서식 10】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 【서식 11】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 【서식 1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 【서식 13】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 【서식 14】 지정 공고문(예시)
- 【서식 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16】 사업제안서(예시)
- 【서식 17】 제안요약서
- 【서식 18】 서비스 내용 요약서
- 【서식 19】 제공기관 지정서
- 【서식 20】 KB가맹점 신청을 위한 안내문
- 【서식 2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도/시군구용)
- 【서식 22】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제공기관용)
- 【서식 23】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 【서식 24】 모니터링 양식
- 【서식 2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사업 신청서
- 【서식 2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 2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서

※ 붙임1,2 :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매뉴얼
 붙임3 :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서식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바우처) 종료(예정)안내문(예시 1)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월부터 계속해서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 20 년 월 일까지 첨부 서류를 지참하셔서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하나, 매월 ○○일 이전에 재신청하신 경우 다음달부터, 매 월 ○○일 이후에 재신청·전송한 경우 다다음달부터 바우처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예산 여건이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함께 예산 조정이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에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하지 수가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지속 사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사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서식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바우처) 종료(예정)안내문(예시 2)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 부터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 바우처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연장신청이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기관 제외)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하지 수가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 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재활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사업 개발과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제공 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 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5.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변경 또는 조기에 중지될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서비스내용	▶ 해당 사업 서비스 내용 명시
바우처	바우처 지원 내용 명시(월○○만원)
본인부담금	제공기관별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과의 계약된 방법 및 시기에 납부(정부에서 지원하는 월○○만원을 제외한 추가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서식 10】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읍·면·동 비치용)

1. 전자바우처 카드로 시행되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는 반드시 KB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셔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수령지로 직접 배송되므로 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폐기하시면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2. 바우처카드는 신용, 체크카드로 구분되며 본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신청시 요청한 카드유형과 달리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중 바우처전용카드로 발급되어지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휴카드로 부가서비스제공기관에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3. 바우처카드 중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카드는 사업별 별도 카드를 사용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SI)의 경우 처음 발급된 카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CSI사업의 경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또 다른 서비스 신청 시 재사용 가능함에 주의하여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타시군구로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의 자격이 자동 중지되며,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때에는 전입 시군구에서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 단, 매월 21일마감이후 재신청시에는 익익월 서비스부터 적용가능합니다.
5.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서식 1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 서비스 대상자(갑)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명 : (인) (“갑”과의 관계 :)

주소 :

연락처 : (E-mail :)

○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설명 : (대표자 : 인)

주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서비스 제공) ①“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배치한다.

③“을”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

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회복지서비스 비용) ①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사회복지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②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4조(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5조(통지사항) ①“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계약 취소 등) 서비스 실시 중에 “갑”과 “을” 쌍방간 법령에 위반한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갑”과 “을” 쌍방은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제9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11. . .

【서식 13】

서비스 제공 기록지(월)(예시)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제공자 :

20 년	/	/	/	/	/	/	/	/	/
(예) 1. 도서									
도서명									
도서관련 부모 상담									
기타()									
2. 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									
독서이력관리									
부모상담									
기타()									
3. 부가서비스 제공									
총 서비스 제공시간									
비고									
서비스 이용자(확인)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표기합니다. (분단위)

* 상기 서비스 이외 각 시설 특성상 중요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제공시간을 기타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은 대상자의 특이 상태 등을 기록합니다.

【서식 14】 공고 제 호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예시)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새로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 지정 대상 : 아래 사업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1) ○○○ 사업

2) △△△ 사업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 : ○○○ 시장(군수, 구청장)

■ 지정 기간 : '20.1.31까지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총 사업비 : ○○○억원

○ ○○○ 사업 : ○○○ 억원

○ △△△ 사업 : ○○○ 억원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존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 . . . ~ 20 . . . (0주)
-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금융기관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정 기간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사업 참여 제외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0시 00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기관명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
					등록일
전담관리자	(전화)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input type="checkbox"/> 공공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서식 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서비스 사업 제안서(예시)

I. 제안개요

- * 사업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등을 요약 기술
 -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II. 제안기관 일반

- * 제안 기관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 사업현황, 재무 현황,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사회공헌활동 현황 등

III. '09년 사업 실적(기존사업자만 작성)

- * 당초 제안 내용 준수 실적, 사업관리체계 및 인프라 확충실적, 품질관리 실적, 홍보 등 사업 수행 노력도 등

IV. 세부 사업계획

- * 서비스 공급 지역 범위, 서비스 공급 방안, 서비스 공급 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 계획, 서비스 공급인력 교육 계획, 서비스 관련 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서비스 성과 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V. 기타

- * 사업 특화 방안, 기타 서비스 관련 추가 사항 등

【서식 17】

제안 요약서	
사 업 명	
기 관 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 형태로 기술
대응투자 규모	총천원(현물천원, 현금천원, 기타천원) ※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사업계획 요약	
<p>*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 관리방안 등 주요 사항 요약 서술</p>	

【서식 18】

서비스 내용 요약서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2.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 단가는 VAT 포함가격으로 제시

【서식 19】

(앞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 사업 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기관명 :

소재지 :

사업기관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지정기간 : 20 년 월 일 ~ 2012 년 1월 31일

위 기관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 사업 제공기관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제안서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사업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등 관계 도우미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 기간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뜻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서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우처 결제를 위하여 지정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가 제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공기관은 배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공표와 함께 성고가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법령의 개폐, 정책 변경, 예산액 변경, 기타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기관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인력의 쾌적한 근무 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으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서식 20】

KB가맹점 신청을 위한 안내문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시 본 문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여러분께(가맹점 신청시)

- 바우처 가맹점은 기존 KB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와 동일하며 가입시 접수서류를 확인하신 후 가입 절차에 준하여 가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EDC 특약이 등록되므로 반드시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를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가맹점 가입등록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여부는 주무부서에서 사후검증(향후 자동 검증)을 하며, 가입자격 적격시에 즉시 가입등록이 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거래 방법

구 분	전산 거래	비 고
가입등록거래	2001거래	- 업종코드 (바우처:9007 신설)

-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 :
K-Portal > 전자매뉴얼 > 카드 > 장표/서식 > 가맹점
- 가맹점가입신청서와 기타 서류는 입력점에서 보관

■ 기타 관련 문의 사항

- 국민은행 카드 콜센터 1588-1688/1599-7900, (02)2073-4973~4

3.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다. 서비스 적정성

1. 서비스 제공자가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 ① 항상 잘 지킨다 ② 대체로 잘 지킨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 지키지 않는다 ⑤ 항상 잘 지키지 않는다

2.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이후 귀하의 삶이 질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라. 기타 사항

1. 앞으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1회 더 제공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동일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면접 후 기록(이용자 설문 없이 제공기관에서 자체입력)

1. 이용자 소득등급()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차상위계층 이상

2. 서비스 이용 기간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④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⑤ 12개월 이상

* 최초 1회 설문 : 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설문 시 최초 1회(연1회)만 설문

* 모든 문항은 필수응답 문항입니다.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식 25】

20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역개발형) 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① 개발주체 (■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공동개발) ② 사업성격 (■ 일반사업, □ 패키지형 사업)			
사업명	00 프로그램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소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Fax	
사업예산	총사업비	000천원	국고	000천원
			지방비	00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20 . 02. ~ 20 . 01. (개월간)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2011 년 월 일				

【서식 2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사업유형		① 개발 주체: <input type="checkbox"/> 시도개발 <input type="checkbox"/> 시도공동개발 <input type="checkbox"/> 시군구공동개발 <input type="checkbox"/> 시군구개발 ② 사업성격: <input type="checkbox"/> 일반사업 <input type="checkbox"/> 패키지형 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보건복지부 작성	<input type="checkbox"/>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input type="checkbox"/> 아동정서발달 <input type="checkbox"/> 아동체험학습 <input type="checkbox"/> 렌탈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input type="checkbox"/> 아동돌봄 <input type="checkbox"/> 부모학교 <input type="checkbox"/> 맞춤형 운동처방 <input type="checkbox"/> 아동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고령자 소외예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2011. . ~ 2012. 1.(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11. 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 사업 대상시군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고(A)	지방비(B)	기타(C)	대상자 수 (예산인원)
2. 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월 회	주 회	시간
		2.			월 회	주 회	시간
				분기	회		
				분기	회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별 기관수	<input type="checkbox"/> 공공()개소, <input type="checkbox"/> 영리()개소,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개소, <input type="checkbox"/> 대학()개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개소		
		2					
3			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자격명:),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4							
3.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소득	재산			
		장애	가구특성	※ 예상대상자수(월)		○○명	
		기타요구					
	대상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4. 바우처 내역	바우처 지원액(월별)	공급가격(계) (A=B+C)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천원		천원	천원		
	대상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input type="checkbox"/> 1회(없음) <input type="checkbox"/> 1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2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3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4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6개월마다					
5.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서식 2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역개발형) 사업계획서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5. 서비스 제공
6. 성과 목표 및 지표
7. 소요 예산

II.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3.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III. 기타 특이사항

-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가격 현황표
-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 〈별첨 3〉 사업 총괄 계획서 (패키지형 사업)

사 업 명

I.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 2) 선정 기준
-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 1) 서비스 가격
-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대상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청년사업단 필수 기재 사항]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인원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인원 중 청년(20~30대) 채용 목표인원 (명, %)	비고
명	명(%)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 (청년사업단은 20~30대 채용 가능인력 현황 및 수급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④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산출내역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II.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3.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III. 기타 특이사항

【참고】 사업계획서 (서식 27) 작성요령

1 사업명

- 서비스 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예시 》

- ▶ 저소득 아동 현장체험 프로그램 (X) → 저소득 아동 미래비전형성 사업(예시)
- ▶ 중증장애인 생활공간 청소대행서비스(X) → 중증장애인을 위한 건강투자서비스(예시)

2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시 》

- ▶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노인, 장애인, 산모 등 개인별 1:1 맞춤형 운동처방에 따른 삶의 질 제고
 - 지역내 대학 졸업생 및 운동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
 - 관련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대상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시 》

- ▶ 어린이 천식·아토피 등 예방을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3-14세 천식·아토피 질환 아동이 있는 가구
 - 1단계 : 6,675가구(57,837명/1.3명×24.2%×62%)
 -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 아토피 등 질환 예방을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 62%
 - 2단계 : 3,177가구(6,675가구×47.6%)
 - ☞ 소아천식 아동비율 : 47.6%(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2) 선정 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시 》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8~16세 미만의 심리·언어·정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자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선착순 등은 지양)

《 예시 》

- ▶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 서비스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 3순위 :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환자 가정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

☞ (예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 → 단순 관광·여행서비스(×)

《 작성 예시 》

▶ 아동조기발달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2시간

- 서비스 내용

·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 발달 및 정서·행동 평가, 맞춤형 상담서비스(인지·놀이·언어 치료, 물리 치료), 부모 상담 및 집단 상담서비스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아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 (1단계)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의 발달·정서·행동 평가

· (2단계) 해당 아동·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윤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 (【월평균 예상 매출액(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100명/10명) ÷ 100만원】 × 적정이윤율(1.1))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전제로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사업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 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가격의 20% 내외로 지자체에서 자율 설정하되, 차상위 120% 이내, 취약계층 등 10% 내외 설정 가능,
 - 대상자 특성,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본인부담 비율 인하 가능(☞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유 명시)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가능
- *정부 지원액 차등 지원은 불가

3) 바우처 관리

□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까지 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 (예시) 2011.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1. 3월임
 - 해당 대상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에 한해 1회(12개월+12개월)에 한하여 재판정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대상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대상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복지 법인이외에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 원칙
 - 다만 서비스 성격,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1개 기관 지정 허용(반드시 사유서 제출)
 - ☞ 수시 공모 등으로 제공기관 지정 지속 확대 노력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대상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자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 다만 배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예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아동 정서순화 정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접수-서비스 제공전 접수)/서비스 제공전 접수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대상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2010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선정시 우대)
-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협약서,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③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Why”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부담을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대상자 모집,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을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4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 * 사업선정기준(안) : 붙임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 개요

- 1) 서비스 명 :
-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 3) 목표인원 : 000명
- 4)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수 : 00명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	원가 항목	세부 항목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	-	-			100%		
서비스 원가(b)	합계	-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소계)					
		홍보비					
		감가상각비					
		000비					
:							
영업이익(c=a-b)	-						

※ 원가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적시

3. 타사 또는 기존 자사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서비스 가격	비고

현금·현물 추가투자 협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지자체명 (또는 민간 기관명)		담당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 현금 : 천원
-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자·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년 월 일

(지자체장, 민간기관 장) (대 표) 직인

(붙임1)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매뉴얼 [제공기관용]

2011년도



보건복지부

목 차

1. 설문 응답

[1] 응답 목록 조회

[2] 설문 응답 입력

[2]-1. 개별 등록

[2]-2. 일괄 등록

2. 설문결과확인(분석)

[1] 설문결과 확인

[2] 설문분석

[2]-1. 기본분석

[2]-2. 빈도분석

[2]-3. 교차분석

[2]-4. 기타 분석(만족도, 응답자 분석)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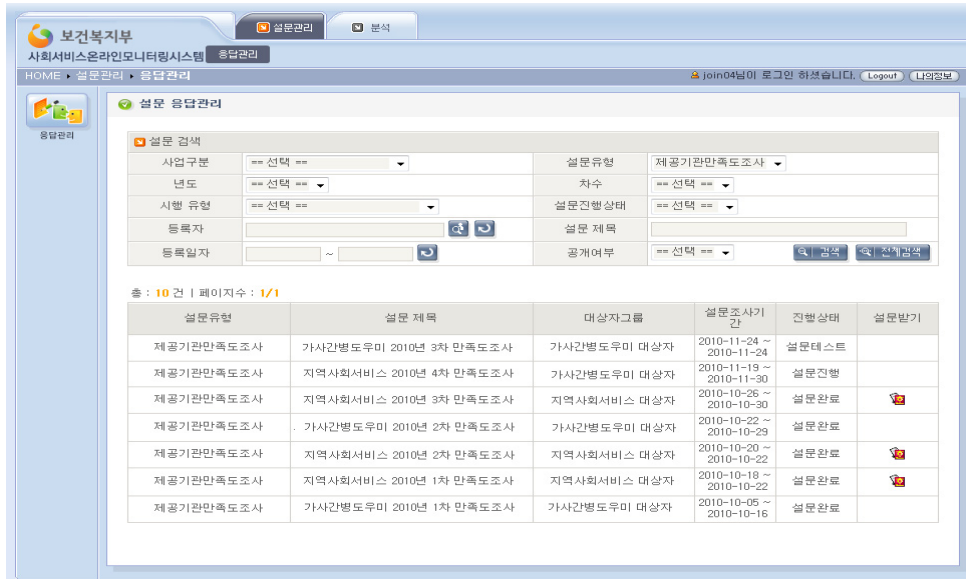
1. 설문 응답

[1] 응답 목록 조회


▶ 화면경로 : 홈 > 로그인 >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 설문관리 > 응답관리




▶ 업무화면(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의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 화면 설명

- 진행상태 : “설문진행”은 응답 가능하나, “설문완료”은 데이터 조회만 가능합니다.
- 설문받기의  을 클릭하면, 해당 설문지를 한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설문 응답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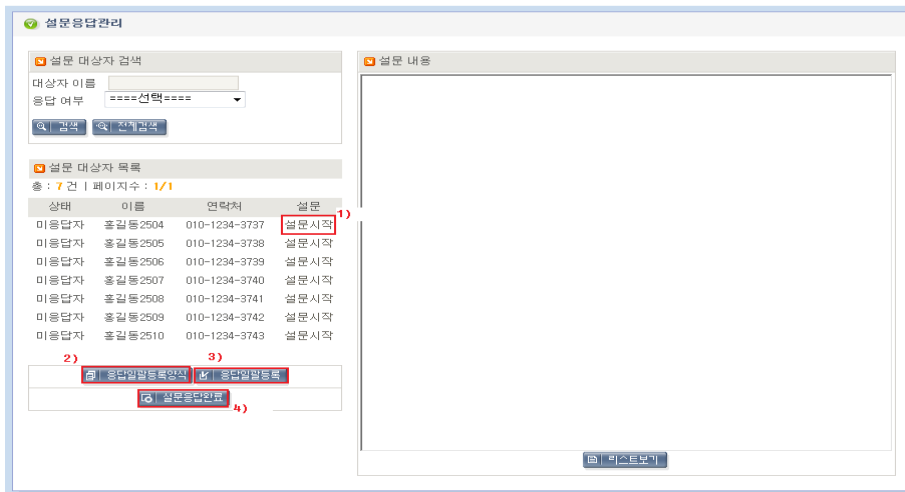
- ▶ 「설문응답관리」 화면에서 해당 설문 제목을 클릭하면 「등록자 정보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등록자 정보 입력 후,  을 클릭하면 설문응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록자 정보확인

제공기관명	빛과소공복지재단
등록자이름	김길동
전화번호	
등록자이름(메모)	한소라 *
전화번호(메모)	010-4462-421 *
휴대전화	

▶ 업무화면



설문응답관리

설문 대상자 검색

대상자 이름

응답 여부

설문 대상자 목록

총 : 7 건 | 페이지수 : 1/1

상태	이름	연락처	설문
미응답자	홍길동2504	010-1234-3737	설문시작 ¹⁾
미응답자	홍길동2505	010-1234-3738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06	010-1234-3739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07	010-1234-3740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08	010-1234-3741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09	010-1234-3742	설문시작
미응답자	홍길동2510	010-1234-3743	설문시작

2) 3)


⁴⁾

[2]-1. 개별 등록

▶ 입력방법

대상자 조회 ⇒ 대상자 상세정보 확인 ⇒ 메모, 접촉이력 등록/수정 ⇒ 답변 등록 ⇒ 임시저장 또는 설문완료 ⇒ (모든 대상자 완료 후) 제공기관 설문응답 완료


- 대상자는 대상자 이름, 응답 여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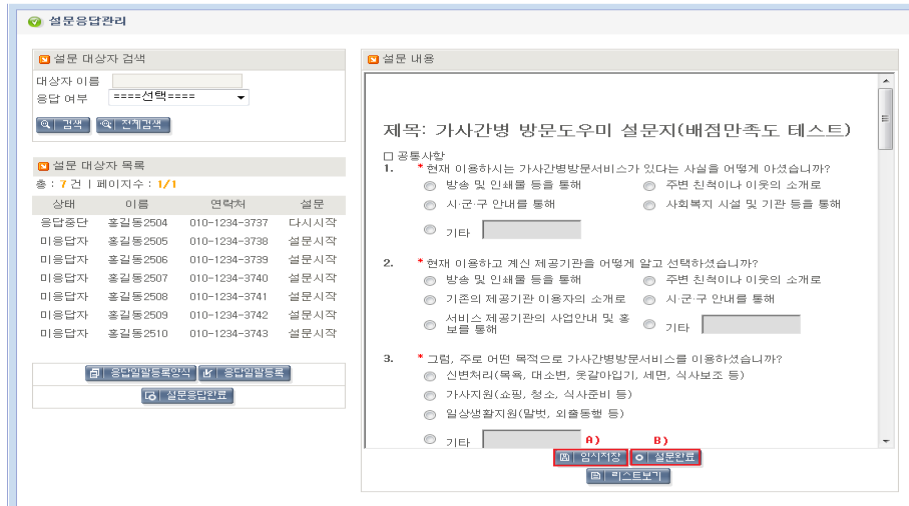
- (좌측) 「설문 대상자 목록」에서 “설문 시작”을 클릭하여 「대상자 상세정보」창이 나타나면, 을 클릭하여 설문 입력을 시작합니다.

* 「대상자 상세정보」: 설문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메모’ 및 ‘접속시도’ 정보 저장 가능

- 오른쪽 「설문 내용」 창의 설문 화면에 응답을 입력합니다.(*표시는 필수응답)
- 설문을 A) “임시저장” 또는 B) “설문완료”할 수 있습니다.(최종 완료 전까지 수정 가능)

* 설문 수정 : 대상자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설문수정”을 클릭하여 수정/수정 후 “설문완료”

- 모든 대상자 설문 완료 후 좌측 창의 을 클릭하면 제공기관 설문을 종료합니다.(※ 주의 : “설문응답 완료” 후에는 설문응답 입력 및 수정 불가능 함)



▶ 화면 설명

- “설문완료”를 클릭한 대상자는 좌측 설문 대상자 목록에서 “응답자”로 변경됩니다.
- 좌측 설문 완료 대상자의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응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일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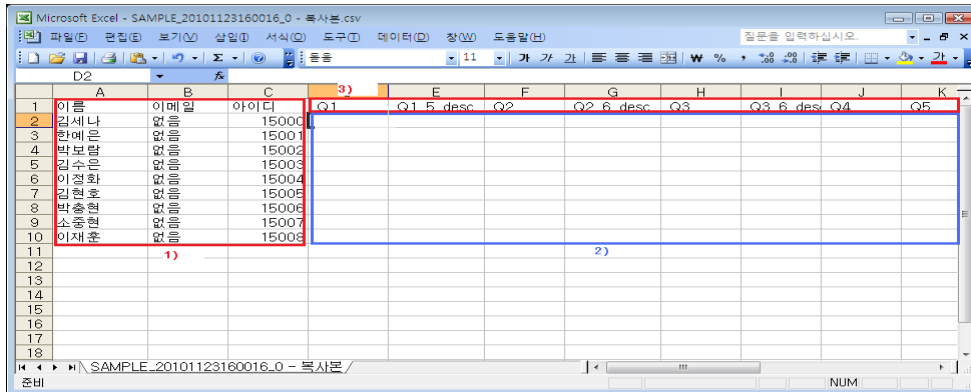
▶ 입력방법

대상자 조회 ⇒ 일괄등록양식 다운로드 ⇒ 파일 작성/저장 ⇒ 파일 등록 ⇒ 일괄등록 결과 확인 ⇒ 제공기관 설문응답 완료

20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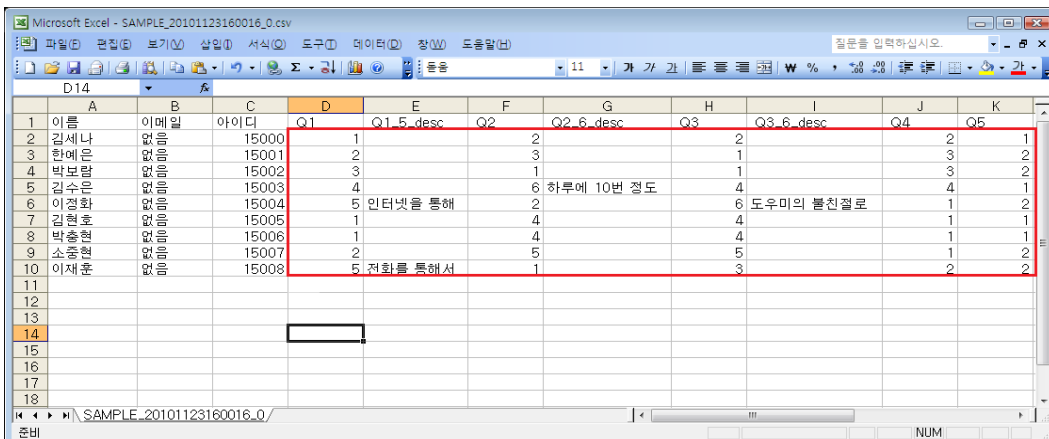
- **응답일괄등록양식** 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저장한 zip파일은 압축을 풀어 설문응답을 작성하여 다시 저장합니다.

[작성방법] 파일을 열어 Q로 시작하는 부분 아래의 빈칸에 응답 값을 입력합니다.(하단 그림 2)
 * 기본정보(이름, 이메일, 아이디)는 작성되어 있으며(하단 그림 1), 모든 문항을 필수응답이므로 모든 값을 기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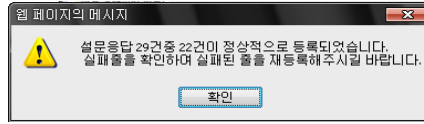


- Q옆의 숫자는 문항의 순서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숫자만 입력 가능)
 예) Q1 : 첫 번째 문항, Q3 : 세 번째 문항
- Q문항순서_보기번호_desc : 숫자, 문자 응답이 가능합니다.(추가 응답 항목)
 (* 쉼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Q12_5_desc : 설문문의 5번째 보기가 '기타()'로 되어 있는 문항으로, 추가응답 기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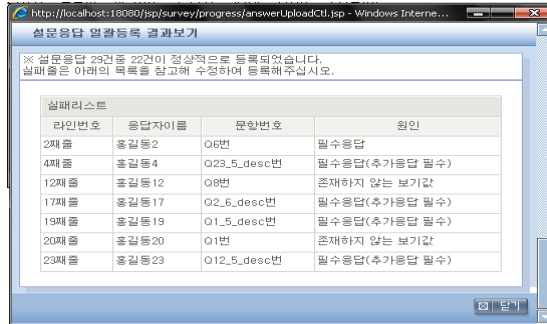
※ 일괄응답 엑셀파일 작성 예



- 설문응답관리 창의 **응답일괄등록** 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설문 응답파일 업로드 창에서 **저장** 을 클릭하면 결과 알림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문응답 일괄등록 결과보기」 창에서 상세결과 목록(실패리스트)을 확인합니다.



- 재등록 : (성공한 응답자 행은 응답엑셀파일에서 삭제하고) 실패한 응답자의 응답 파일을 수정한 후, 다시 일괄 등록합니다.

-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을 완료하였을 때 좌측창의 **설문응답완료**를 클릭하면 해당 설문을 완료합니다.

※ 주의 : “설문응답완료”를 한 후에는 설문응답 및 응답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설문결과확인(분석)

[1] 설문결과 확인

- ▶ 화면경로 : 홈 > 로그인 >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 분석 > 설문분석
- ▶ 업무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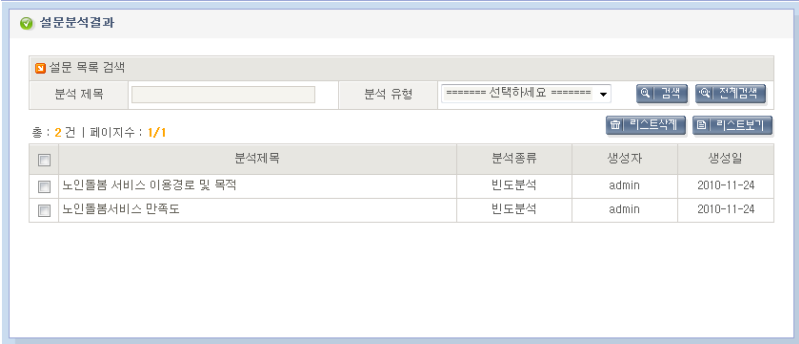


▶ 조회처리방법

- 등록자, 설문제목 등을 입력·선택하여 설문분석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설문제목”을 클릭하여 설문분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존 분석결과 확인방법([2]-2~4의 분석 수행결과 확인)

- **결과목록** 을 클릭하면 기존에 저장해놓은 「설문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리스트에서 분석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제목	분석종류	생성자	생성일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경로 및 목적	빈도분석	admin	2010-11-24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빈도분석	admin	2010-11-24

[2] 설문분석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빈도분석, 교차분석은 분석대상을 선택 후 “분석 실행”, “결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2]-1. 기본분석

- ▶ 기능 : 설문의 기본정보, 설문지표, 설문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의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Excel저장, 설문 RowData저장, 설문지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설문 RawData 저장** : 설문 결과 전체가 압축된 ****.zip 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 업무화면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분석	응답자분석
------	------	------	-------	-------

[Excel 저장](#)
[실문 RawData 저장](#)
[실문기록](#)
[인쇄](#)
[리스트보기](#)

기본정보

설문제목	1만명 설문 테스트		
목표응답 수	없음	설문조사 기간	2010-10-27 ~ 2010-10-30
설문유형	제공기관만족도조사	설문상태	설문완료
등록자	admin	등록일	2010-10-27 13:38:33
수정자		수정일	

설문지표

총 설문 참여자 수	4 명	설문 완료 응답자 수	4 명
포기율	0.00%	응답률	100%
전체문항개수	6 문항	완료자 평균응답시간	6 초

[2]-2. 빈도분석

- ▶ 기능 : 문항별로 선택한 조합의 응답 간의 빈도를 볼 수 있습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후 **분석실행** 을 클릭합니다.(복수 선택 가능)

▶ 업무화면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분석	응답자분석
------	------	------	-------	-------

[실문기록](#)
[리스트보기](#)

기본정보

설문제목	1만명 설문 테스트		
등록자	admin	등록일	2010-10-27 13:38:33
설문조사경로	이메일	설문상태	설문완료
총 설문 참여자 수	4 명	설문 완료 응답자 수	4 명

* 아래 문항 목록에서 분석할 문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선택 가능 합니다.)
-주관식, 다답형, 개인정보 문항은 분석대상 문항에서 제외 됩니다.

문항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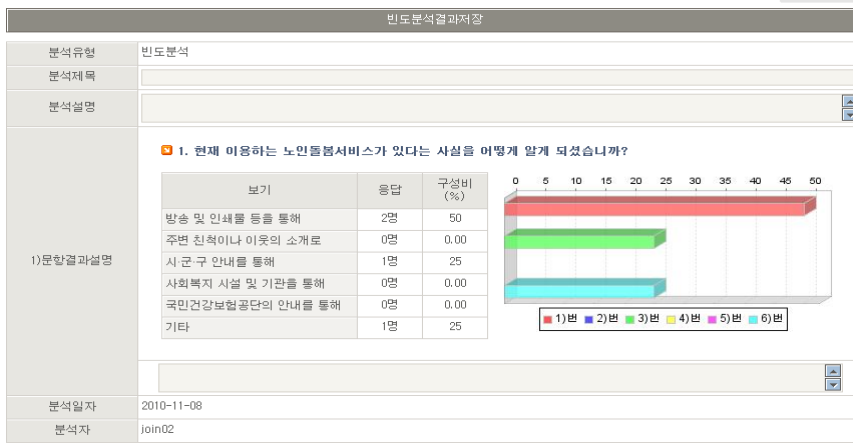
- 현재 이용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 현재 이용하고 계신 제공기관을 어떻게 알고 선택하셨습니까?
- 그럼 주로 어떤 목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마의 진정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마가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하십니까?
-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제때 제공되었습니까?

문항목록

[분석실행](#)
[취소](#)

- 결과 저장 : 「분석리포트」 화면의 **결과저장** 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분석결과저장」 화면에 제목, 설명, 결과설명 등을 입력한 뒤 **결과저장** 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20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결과저장 취소

- 저장 결과는 분석 첫 화면에서 **결과목록** 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5p 참조)

[2]-3. 교차분석

▶ 기능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오른쪽 해당칸으로 이동 후 **분석실행** 을 클릭합니다.
(독립변수는 1개, 종속변수는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주관식 문항 등은 제외)

▶ 업무화면

기분정보

설문제목	1만명 설문 테스트	설문조사 기간	2010-10-27 ~ 2010-10-30
등록자	admin	등록일	2010-10-27 13:38:33
설문조사경로	이메일	설문상태	설문완료
총 설문 참여자 수	4명	설문 완료 응답자 수	4명

* 아래 문항 목록에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독립 변수 문항은 1개, 종속 변수 문항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관식, 다답형, 개인정보 문항은 분석대상 문항에서 제외 됩니다.

- 결과 저장 : 저장 및 결과 확인 방법이 상단의 '[2]-2. 빈도분석'과 동일함

[2]-4. 기타 분석(만족도, 응답자 분석)

▶ 만족도 분석

- 문항 중요도를 점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행,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저장 결과 확인 : 5p 참조)

▶ 응답자 분석

- 개별 응답자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 “응답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선택된 대상자의 설문응답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 ▶ 화면경로 :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 분석 > 만족도 추이분석 또는 만족도 현황

▶ 조회처리방법

- 만족도 추이분석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추이를 분석합니다.
- 만족도 현황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개인별 현황을 분석합니다.

(붙임2)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매뉴얼 (시군구용)

2011년도



목 차

설문결과 확인(분석)

[1] 설문결과 확인

[2] 설문분석

[2]-1. 기본분석

[2]-2. 빈도분석

[2]-3. 교차분석

[2]-4. 기타 분석(만족도, 응답자 분석)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1] 설문결과 확인

▶ 업무화면

진행상태	설문 제목	설문조사기간	등록자	등록일	응답수	테스트	공개여부	분석결과
설문완료	2010년 4차 노인돌봄서비스	2010-11-24 ~ 2010-11-24	admin	2010-11-24 17:14:58	2010	0	전체공개	결과목록
설문완료	2010년 4차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2010-11-22 ~ 2010-11-22	admin	2010-11-22 18:13:42	2010	0	전체공개	결과목록
설문진행	2010년 4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0-11-19 ~ 2010-11-26	admin	2010-11-19 17:00:43	2010	0	비공개	결과목록

▶ 조회처리방법

- 등록자, 설문제목 등을 입력·선택하여 설문분석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설문제목”을 클릭하여 설문분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존 분석결과 확인방법([2]-2~4의 분석 수행결과 확인)

- [결과목록](#) 을 클릭하면 기존에 저장해놓은 「설문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리스트에서 분석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제목	분석종류	생성자	생성일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경로 및 목적	빈도분석	admin	2010-11-24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빈도분석	admin	2010-11-24

[2] 설문분석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빈도분석, 교차분석은 분석대상을 선택 후 “분석 실행”, “결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2]-1. 기본분석


- ▶ 기능 : 설문의 기본정보, 설문지표, 설문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의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Excel저장, 설문 RowData저장, 설문지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설문 결과 전체가 압축된 ****.zip 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 업무화면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분석 응답자분석			
Excel 저장 설문 RowData 저장 설문지보기 인쇄 리포트보기			
기본정보			
설문제목	1만명 설문 테스트		
목표응답 수	없음	설문조사 기간	2010-10-27 ~ 2010-10-30
설문유형	제공기관만족도조사	설문상태	설문완료
등록자	admin	등록일	2010-10-27 13:38:33
수정자		수정일	
설문지표			
총 설문 참여자 수	4명	설문 완료 응답자 수	4명
포기율	0.00%	응답률	100%
전체문항개수	6 문항	완료자 평균응답시간	6 초

[2]-2. 빈도분석

- ▶ 기능 : 문항별로 선택한 조합의 응답 간의 빈도를 볼 수 있습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후  을 클릭합니다.(복수 선택 가능)

▶ 업무화면

기본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도분석 응답자분석			
설문지보기 리포트보기			
기본정보			
설문제목	1만명 설문 테스트		
등록자	admin	설문조사 기간	2010-10-27 ~ 2010-10-30
설문조사경로	이메일	등록일	2010-10-27 13:38:33
총 설문 참여자 수	4명	설문 상태	설문완료
		설문 완료 응답자 수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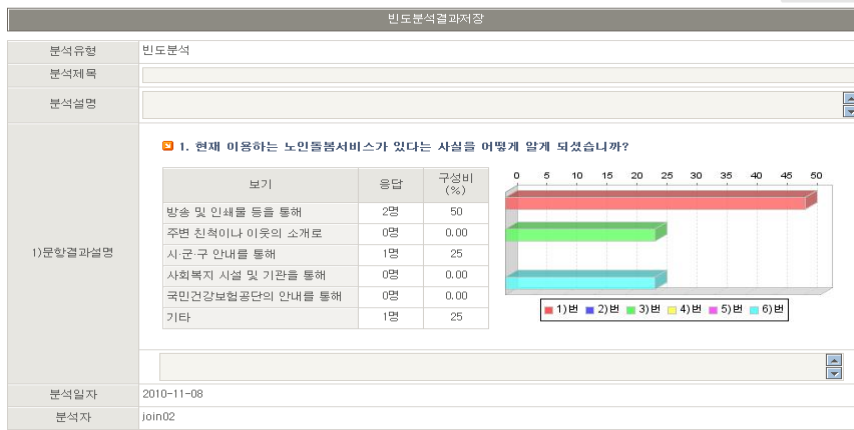
* 아래 문항 목록에서 분석할 문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선택 가능 합니다.)
 -주관식, 다답형, 개인정보 문항은 분석대상 문항에서 제외 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0;">문항목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이용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 2. 현재 이용하고 계신 제공기관을 어떻게 알고 선택하셨 3. 그림, 주로 어떤 목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 4. 노인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친절성에 대해 만족하십니 5. 노인돌봄서비스 돌보미가 얼마나 친절하게 처리하는가 6.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제때 제공되었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 0;">문항목록</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100px; width: 100%;"></div>
----------------------------------------------------------------------------------------------------------------------------------------------------------------------------------------------------------------------------------------------------------------------------------------------------------------------------------------------------------------	-----------------------------------------------------------------------------------------------------------------------------------------------

▶
◀




- 결과 저장 : 「분석리포트」 화면의 **결과저장** 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분석결과저장」 화면에 제목, 설명, 결과설명 등을 입력한 뒤 **결과저장** 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저장 결과는 분석 첫 화면에서 **결과목록** 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5p 참조)

[2]-3. 교차분석

- ▶ 기능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 분석 대상 문항을 오른쪽 해당칸으로 이동 후 **분석실행** 을 클릭합니다. (독립변수는 1개, 종속변수는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주관식 문항 등은 제외)

▶ 업무화면

- 결과 저장 : 저장 및 결과 확인 방법이 상단의 '[2]-2. 빈도분석'과 동일함

[2]-4. 기타 분석(만족도, 응답자 분석)

▶ 만족도 분석

- 문항 중요도를 점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행,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저장 결과 확인 : 5p 참조)

▶ 응답자 분석

- 개별 응답자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 “응답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선택된 대상자의 설문응답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만족도 추이 및 현황 분석

▶ 화면경로 :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 > 분석 > 만족도 추이분석 또는 만족도 현황

▶ 조회처리방법

- 만족도 추이분석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추이를 분석합니다.
- 만족도 현황 : 사업구분, 설문유형 등을 선택하여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군구별, 제공기관별, 개인별 현황을 분석합니다.

(붙임3)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80천원	39,380	27,476	39,480
		41,959	29,276	42,066
2인	2,492천원	70,486	77,703	70,758
		75,103	82,793	75,393
3인	3,646천원	103,954	125,640	105,392
		110,763	133,869	112,295
4인	4,155천원	118,625	143,043	120,493
		126,395	152,412	128,385
5인	4,593천원	130,351	156,410	132,406
		138,889	166,655	141,079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56천원	47,004	40,508	47,633
		50,083	43,161	50,753
2인	2,990천원	84,348	97,963	84,793
		89,873	104,380	90,347
3인	4,375천원	124,385	149,479	126,395
		132,532	159,270	134,674
4인	4,986천원	141,108	169,217	143,421
		150,351	180,301	152,815
5인	5,511천원	158,264	188,816	161,825
		168,630	201,183	172,425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438천원씩증가(438천원=5인-4인=4,593-4,155)

※ 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82%로 조정 ('10년도는 2.665%)

(붙임4)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349,776	9,864	2,216	13,490	1,933,705	54,530	52,330	55,221
478,363	13,490	2,335	15,246	1,958,209	55,221	53,388	55,949
540,644	15,246	2,605	16,920	1,984,016	55,949	54,352	56,397
600,013	16,920	2,839	18,168	1,999,886	56,397	55,322	56,400
644,243	18,168	3,304	19,504	2,000,001	56,400	56,074	56,635
691,638	19,504	3,304	19,774	2,008,349	56,635	57,211	57,388
701,193	19,774	3,524	20,656	2,035,038	57,388	58,095	58,097
732,471	20,656	4,446	21,369	2,060,187	58,097	59,253	58,801
757,775	21,369	5,244	22,255	2,085,131	58,801	60,141	59,280
789,187	22,255	6,100	22,560	2,102,125	59,280	61,369	59,931
800,001	22,560	6,291	22,560	2,125,220	59,931	62,420	60,683
800,001	22,560	6,978	22,869	2,151,874	60,683	63,303	61,405
810,965	22,869	7,262	23,485	2,177,486	61,405	64,265	62,015
832,791	23,485	7,452	23,946	2,199,124	62,015	65,553	62,371
849,133	23,946	8,084	24,160	2,211,748	62,371	66,527	63,171
856,740	24,160	8,700	24,319	2,240,098	63,171	67,533	63,922
862,385	24,319	9,154	24,719	2,266,721	63,922	68,429	64,714
876,567	24,719	9,256	25,249	2,294,821	64,714	69,618	65,199

IV. 부록(공통서식)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895,371	25,249	9,256	25,380	2,312,023	65,199	70,562	65,996
900,001	25,380	9,429	25,380	2,340,279	65,996	71,471	66,835
900,000	25,380	10,345	25,380	2,370,022	66,835	72,242	67,595
900,001	25,380	10,842	25,525	2,396,991	67,595	73,415	68,108
905,134	25,525	11,247	25,884	2,415,193	68,108	74,367	68,996
917,860	25,884	11,247	26,184	2,446,655	68,996	75,534	69,844
928,512	26,184	11,422	26,259	2,476,753	69,844	76,613	70,486
931,159	26,259	11,611	26,664	2,499,495	70,486	77,703	70,758
945,550	26,664	12,215	26,851	2,509,136	70,758	78,848	71,661
952,146	26,851	12,899	27,295	2,541,154	71,661	79,941	72,572
967,923	27,295	13,028	27,783	2,573,471	72,572	81,200	73,381
985,228	27,783	13,290	28,188	2,602,173	73,381	82,236	74,256
999,559	28,188	13,360	28,200	2,633,181	74,256	83,507	75,185
1,000,002	28,200	14,287	28,200	2,666,121	75,185	84,726	76,023
1,000,001	28,200	14,878	28,200	2,695,862	76,023	85,981	76,667
1,000,001	28,200	14,879	28,200	2,718,671	76,667	87,248	77,637
1,000,001	28,200	14,880	28,208	2,753,080	77,637	88,530	78,615
1,000,280	28,208	15,298	28,614	2,787,754	78,615	89,857	79,415
1,014,684	28,614	16,000	29,182	2,816,118	79,415	91,181	80,415

20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1,034,821	29,182	16,856	29,620	2,851,606	80,415	92,469	81,478
1,050,341	29,620	17,029	30,079	2,889,300	81,478	93,800	82,268
1,066,619	30,079	17,029	30,610	2,917,296	82,268	95,220	83,302
1,085,448	30,610	17,029	31,008	2,953,968	83,302	96,590	84,348
1,099,572	31,008	17,029	31,020	2,991,052	84,348	97,963	84,793
1,100,000	31,020	17,029	31,091	3,006,852	84,793	99,460	85,817
1,102,504	31,091	17,081	31,578	3,043,150	85,817	100,917	86,925
1,119,804	31,578	17,425	32,152	3,082,454	86,925	102,358	87,985
1,140,133	32,152	18,183	32,545	3,120,048	87,985	103,898	89,133
1,154,060	32,545	18,990	33,096	3,160,745	89,133	105,415	90,219
1,173,608	33,096	19,431	33,683	3,199,254	90,219	106,935	91,281
1,194,416	33,683	20,271	33,840	3,236,927	91,281	108,537	92,445
1,200,001	33,840	20,712	33,840	3,278,188	92,445	110,064	93,567
1,200,001	33,840	21,142	33,840	3,317,974	93,567	111,780	94,738
1,200,001	33,840	21,651	33,858	3,359,496	94,738	113,361	95,875
1,200,629	33,858	22,475	34,296	3,399,838	95,875	115,073	97,191
1,216,171	34,296	22,652	34,896	3,446,500	97,191	116,772	98,474
1,237,463	34,896	22,652	35,295	3,491,995	98,474	118,484	99,620
1,251,612	35,295	22,689	35,809	3,532,639	99,620	120,292	101,025

IV. 부록(공통서식)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1,269,826	35,809	23,108	36,391	3,582,438	101,025	122,017	102,424
1,290,468	36,391	23,893	36,659	3,632,050	102,424	123,835	103,954
1,299,979	36,659	24,513	36,660	3,686,313	103,954	125,640	105,392
1,300,000	36,660	24,643	36,848	3,737,319	105,392	127,405	106,936
1,306,666	36,848	24,643	37,400	3,792,074	106,936	129,285	108,536
1,326,257	37,400	24,804	37,942	3,848,802	108,536	131,120	110,117
1,345,449	37,942	25,240	38,286	3,904,854	110,117	133,045	111,861
1,357,675	38,286	26,259	38,860	3,966,719	111,861	134,990	113,360
1,378,017	38,860	26,876	39,380	4,019,855	113,360	136,884	115,022
1,396,457	39,380	27,476	39,480	4,078,798	115,022	138,951	116,850
1,400,001	39,480	28,236	39,503	4,143,614	116,850	140,909	118,625
1,400,831	39,503	28,640	39,961	4,206,573	118,625	143,043	120,493
1,417,056	39,961	29,119	40,532	4,272,806	120,493	145,092	122,403
1,437,306	40,532	29,999	41,002	4,340,525	122,403	147,303	124,385
1,453,980	41,002	30,292	41,576	4,410,820	124,385	149,479	126,395
1,474,340	41,576	30,672	42,173	4,482,093	126,395	151,730	128,321
1,495,498	42,173	31,370	42,300	4,550,400	128,321	154,037	130,351
1,500,000	42,300	32,283	42,300	4,622,386	130,351	156,410	132,406
1,500,000	42,300	32,800	42,300	4,695,239	132,406	158,787	134,516

201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1,500,000	42,300	33,530	42,505	4,770,057	134,516	161,252	136,733
1,507,256	42,505	34,428	43,102	4,848,671	136,733	163,840	138,946
1,528,456	43,102	34,696	43,626	4,927,151	138,946	166,469	141,108
1,547,019	43,626	35,260	44,160	5,003,821	141,108	169,217	143,421
1,565,955	44,160	36,124	44,742	5,085,864	143,421	172,148	146,103
1,586,594	44,742	36,896	45,119	5,180,962	146,103	175,081	148,915
1,599,968	45,119	37,481	45,296	5,280,658	148,915	178,251	151,841
1,606,238	45,296	38,342	45,911	5,384,446	151,841	181,575	154,927
1,628,040	45,911	39,000	46,487	5,493,853	154,927	185,076	158,264
1,648,470	46,487	39,799	47,004	5,612,196	158,264	188,816	161,825
1,666,801	47,004	40,508	47,633	5,738,459	161,825	192,853	165,562
1,689,128	47,633	41,115	47,940	5,870,982	165,562	197,188	169,483
1,700,000	47,940	41,928	48,036	6,010,039	169,483	201,846	174,125
1,703,397	48,036	42,581	48,672	6,174,651	174,125	206,967	179,263
1,725,967	48,672	43,311	49,255	6,356,836	179,263	212,656	184,846
1,746,616	49,255	44,156	49,814	6,554,827	184,846	218,911	191,012
1,766,442	49,814	44,904	50,503	6,773,487	191,012	226,004	198,061
1,790,882	50,503	45,757	50,760	7,023,441	198,061	234,114	206,458
1,800,001	50,760	46,544	51,103	7,321,212	206,458	243,586	216,745

IV. 부록(공통서식)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1,812,146	51,103	47,404	51,745	7,685,984	216,745	254,787	229,986
1,834,923	51,745	48,132	52,349	8,155,540	229,986	268,470	248,183
1,856,331	52,349	48,949	53,044	8,800,811	248,183	286,040	276,422
1,880,997	53,044	49,781	53,568	9,802,208	276,422	309,869	336,998
1,899,581	53,568	50,628	53,786	11,950,276	336,998	347,236	738,963
1,907,307	53,786	51,494	54,530	26,204,377	738,963	500,078	